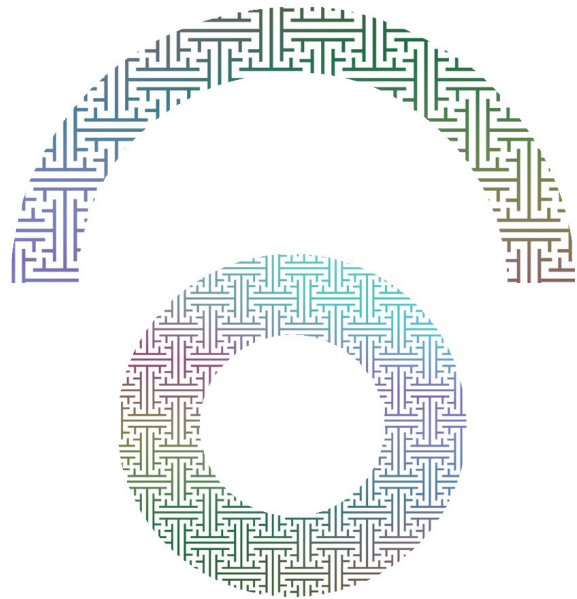


인감증명의 기능 및 활용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방안연구



연구진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감증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시행하였음
- 그간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과도한 인감납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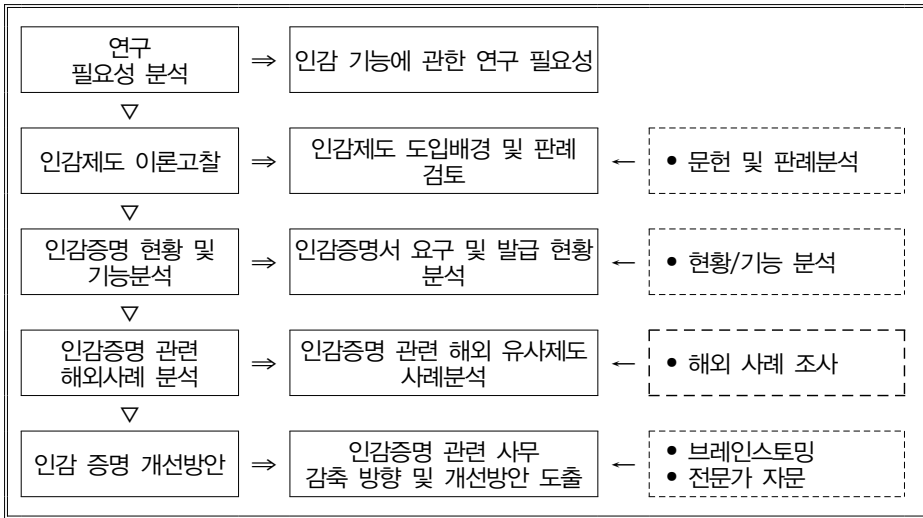
연구목적

- 최근의 인감증명방식이 바뀌는 사회현상을(간접증명방식)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 인감증명에 신분확인, 본인의사 확인기능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굳이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서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인감증명 기능과 관련하여 연혁적 조사와 아울러 인감증명 발급 실태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감증명의 본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고, 이러한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인감요구를 최소화할 방안을 주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인감증명 기능 및 증명발급 현황, 해외사례 등 연구
 - 인감 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인감 증명서 요구 관련 현황 분석
 - 인감 증명 관련 기능 분석(부처별, 지역별, 기능별)
 - 해외 유사제도 사례조사(국가단위 인감 증명 관련 제도 운영)

<연구의 구성체계>



3. 인감증명제도 도입배경 및 판례 검토

- 인감증명제도 도입배경
 -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에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조선총독부가 강제적으로 도입한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인감증명규칙’이 그 효시가 되었음

- 그 후 인감증명규칙은 인감증명법(1961.9.23. 법률 제724호)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동법 및 동시행령(1962.6.12. 각령 제800호)에 의해 개인용 인감이 규율되었음
 - 현재, 법률행위에 있어 인감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3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인감증명제도가 총 18차례 개정되었음
- 인감증명제도의 고찰
- 인감이란, 개인의 도장을 행정청(시·군·구)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공무원이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
 - 인감증명 주요 활용분야를 살펴보면 1) 부동산 및 재산권 관련 사무, 2) 가족관계 관련 사무, 3) 대리인 위임 관련 사무, 4) 저당권 설정 관련 사무, 5) 각종 법인설립이나 계약 관련 사무 등으로 볼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역대 정부별로 인감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며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민들 사이에 이미 굳어진 관행과 인감에 대한 과도한 오신이 있음
 - 인감증명제도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리에 대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소명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체수단인 공증제도의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는 등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편할 수 있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됨
- 인감증명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행정청에 신고된 본인 고유의 서명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임

- 공증제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공증인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법률행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제도임

□ 인감증명 관련 판례 동향 검토

- 대법원 판례요지는 인감증명의 기능에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기능 외에 본인확인, 본인의사확인 기능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 2006년 이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됨에도 인감증명서 자체에서 본인의사 확인 기능에 대해 기존의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급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오랜 관행으로 인한 인감폐지의 어려움
 -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임
 - 다수의 학자들이 인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며, 단계적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간접증명방식 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소재 불분명
 - 간접증명방식 변경으로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음
 - 최근 판례 경향은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법의 기능명확화와 공무원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사료됨
- 인감증명서의 범죄악용으로 인한 보안방안 마련
 -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범죄가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인감증명서의 인영확인과 관련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보안상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필요
 - 장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서명확인제도가 활성화가 필요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 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4. 국내 인감증명 및 존치사무 현황 분석

정책적 시사점

- 인감증명 관련 법령 정비 및 관계자의 인식제고 필요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인감증명 관련 법령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사무에 대한 인감증명 요구의 필요성을 판단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
- 일반계약, 연봉계약, 대행계약 등 인감증명 폐지
 -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일반계약, 연봉계약, 대행계약 등 관련 사무는 점차적으로 인감증명을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
- 부동산매매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무는 공증제도 도입
 - 특정자산에 대한 매매와 매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처럼 약식으로 거래성립을 하기 보다는 공증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대리인(위임인)증명 또는 대리(위임)계약에 대한 보안대책 필요
 - 대리인(위임인)증명이나 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위임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절차가 요구

- 법인등기(설립, 변경) 관련 사무의 제도보완
 - 법인등기 사무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법인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

5. 인감증명 관련 해외 사례 분석

해외사례 개요

- 2016년 4월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인감증명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 대부분 외국에서는 주로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를 병행하여 본인의사확인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았음
- 일본과 대만은 인감도장 위조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로 인하여 인감증명 사무를 감축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는 방향 모색
- 유럽국가에서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서명제도나 전자신분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해외사례 종합비교>

국가명	본인의사 확인 방법			
	인감제도	서명제도	공증제도	기타
중국	-	-	○	-
일본	○	-	○	-
대만	○	-	○	-
영국	-	○	-	-
아일랜드	-	-	-	○
스웨덴	-	○	-	-
포르투갈	-	○	○	-
네덜란드	-	○	-	-
폴란드	-	-	○	-
독일	-	○	○	-
스위스	-	○	○	-
오스트리아	-	○	○	-
이탈리아	-	○	○	○
덴마크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 정책적 시사점

○ 전자서명제도 활성화

- 유럽에서는 전자서명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국가가 설립된 인증기관에서 전자발급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음

○ 공증제도의 보편화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증제도를 근거하여 금융거래, 연금, 부동산거래,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에 이르기 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공증인은 법무부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증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증인에 대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신뢰하고 있음

○ 서명제도와 공증제도가 병행

- 담당공무원 또는 공증인에게 신분증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적거래에서도 서명방식이 법률적 효력이 갖고 있음

- 본인서명사실과 공증제도 병행을 통하여 부동산 계약, 자동차매매 등 사인 간 거래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음

6. 인감증명 관련 개선방안

- 인감사무 감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감증명 제도의 기능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인감사무의 감축 및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방향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1단계: 인감요구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 추진이 필요
 - 2단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공증제도 등과 같이 인감증명 대체 수단의 활성화
 - 3단계: 계약(매매) 관련 사무의 공증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인감증명 관련 개선하기 위해서 세부적 실천방안으로 5가지 제시함
 - 오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인감증명 대체 수단 활성화
 - 1차: 인감증명 관련 법제도 정비
 - 2차: 인감증명 대체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 3차: 부동산매매나 비교적 단위가 큰 사업은 공증제도 활용 유도
 - 공무원의 인감증명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지속적인 감축 추진
 - 현행 법령이나 관행에 의해서 인감증명 요구사무에 대한 과감한 정비
 - 인감증명 제도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 인감증명서의 범죄악용을 막기 위한 인감증명제도 폐지
 - 인감증명서 관련 위조범죄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인감증명제도 폐지나 사적재산권 관련 사무는 공증제도 활용으로 대체

- 인감증명 대비 비교우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대책 강구
 - 대대적인 주민홍보 실시와 다양한 시책 추진
 - 인감증명 대비 비교우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위주의 확산방안을 병행하는 방안 모색
- 부동산매매 관련 사무의 공증제도 의무화
 - 전 세계적으로 계약(매매)관련 사무에 있어서 공증제도 의무화
 - 우리나라 공증제도 널리 활용 및 차등적인 수수료 체계 확립이 필요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3절 연구의 체계	7
제2장 인감증명제도 도입배경 및 판례 검토	9
제1절 인감제도 도입배경	11
제2절 인감 증명서 요구제도 고찰	16
제3절 인감증명 관련 판례 동향 검토	39
제4절 인감증명제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	46
제3장 국내 인감증명 및 존치사무 현황 분석	51
제1절 국내 인감요구사무 감축 실태	53
제2절 국내 인감 신고 및 발급현황	56
제3절 국내 인감요구 존치사무 분석	59
제4절 현황분석의 시사점	61
제4장 인감증명 관련 해외 사례 분석	65
제1절 해외사례 선정 현황	67
제2절 각 국가별 인감증명 관련 유사제도 사례분석	68
제3절 해외사례 종합비교 및 시사점 도출	79



제5장 인감증명 관련 개선방안	85
제1절 인감사무 감축의 기본방향	87
제2절 세부적 실천방안	90
참고문헌	96
부록 : 인감증명 대체사례	98



표 차례

<표 2-1> 인감증명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31
<표 2-2>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비교	49
<표 3-1>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전체)	54
<표 3-2>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정부)	54
<표 3-3>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교육청)	55
<표 3-4>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시·도)	55
<표 3-5> 연간 인감 신고 현황	56
<표 3-6> 연간 인감증명 발급 현황	57
<표 3-7> 연간 신청자별 인감증명 발급 현황	57
<표 3-8> 연간 용도별 인감증명서 발급현황	58
<표 3-9> 중앙부처 존치사무의 기능분석	59
<표 3-10> 시도교육청 존치사무의 기능분석	60
<표 3-11> 시도 지방자치단체 존치사무의 기능분석 ..	60
<표 4-1> 해외사례 종합비교	80
<표 5-1>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비교우위	92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의 구성체계	7
<그림 2-1> 인감증명제도 처리 절차	17
<그림 4-1> 사례조사 응답국가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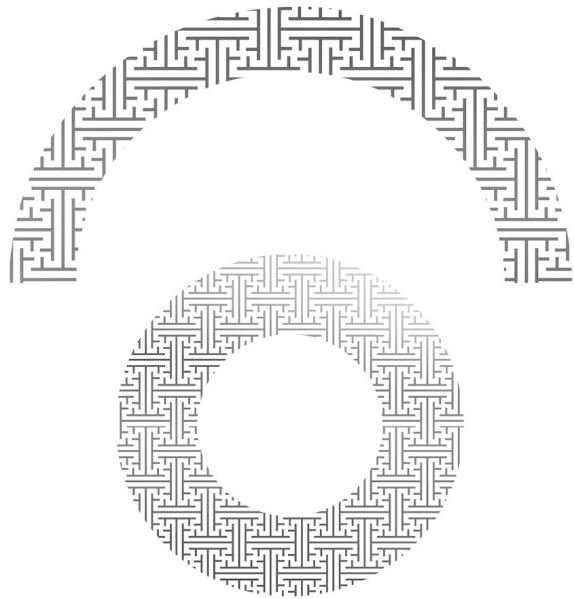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감증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시행하였음
 - 그간의 인감증명사무는 인감신고절차의 간소화(1962.12.12. 제1차 개정), 인감신고자격의 확대(1996.12.30. 제6차 개정), 인감의 전산화(1997.12.17. 제7차 개정), 전국 온라인발급 실시(2002.03.25. 제10차 개정), 발급기관의 확대(2004.10.16. 제11차 개정) 등
-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간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¹⁾ 있으나 의외로 매년 인감증명서의 발급통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인감 요구 근거법령 전수조사 및 감축을 실시한 결과, 총 2,402개에게 1,010개로 감축하였으나, 실제 발급률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2011년: 42,912천통, 2015년: 43,198천통)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본인의사의 진정성을 확인(인영과 증명서 대조확인)하는 수단으로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1)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감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2006~2007년도 : 국무조정실 주관
 - 총 2,402개(중앙 245, 지방 2,157) 사무 중 880여건 감축
 - *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검토 및 추진(2008년도)
- ② 2009년도 : 대통령 지시, 국가경쟁력위원회 주관
 - 중앙부처 209개 인감요구사무 중 125개(60%) 감축 완료
- ③ 2012년도 : 행안부·국가경쟁력위원회/산하기관 대상
 - 627개 기관, 1,732개 사무 중 1,002개 사무(57.9%) 감축

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현실화하여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인감증명방식을 개편(2003년 3월 26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고 있음(박광동, 2010: 342)
- 그간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과도한 인감남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행 인감증명법 상에서는 인감증명서의 기능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 해석에 의존하여 인감증명서가 본인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 또한 기존 판례는 인감증명서 발급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했는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근래의 판례에 따르면,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어서, 최근의 증명방식이 바뀌는 사회현상을(간접증명방식)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인감증명에 신분확인, 본인의사 확인기능에 있어 너무도 굳어진 관행에 따라 굳이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서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
 - 특히, 각종 인·허가나 계약사무에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인감증명 기능과 관련하여 연혁적 조사와 아울러 인감증명 발급 실태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감증명의 본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고, 이러한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인감요구를 최소화할 방안과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대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감증명 판례검토, 발급현황 분석, 기능분석, 해외 사례 분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감증명의 본래 기능에 대한 검토와 인감증명 이외의 다른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향후 인감증명에 대한 감축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함
- 인감은 국민에게 관행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장기적 효과를 거둘 사안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심의 인감감축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대상범위 : 인감증명 기능 및 증명발급 현황, 해외사례 등
- 내용범위
 - 인감 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인감 증명서 요구 관련 현황 분석
 - 인감 증명 관련 기능 분석(부처별, 지역별, 기능별)
 - 해외 유사제도 사례조사(국가단위 인감 증명 관련 제도 운영)

2. 연구의 방법

인감증명 현황 및 기능분석

○ 분석목적

- 인감제도 도입 의의와 성격 규명
- 인감증명의 본래 기능 고찰
- 인감증명 관련 판례 검토

○ 분석방법

- 문헌분석
- 전문가(부동산 중개인 등) 또는 관계공무원(계약담당 등) 인터뷰

인감증명 관련 유사제도 사례분석

○ 분석목적 : 해외 유사제도 사례분석을 통한 인감 기능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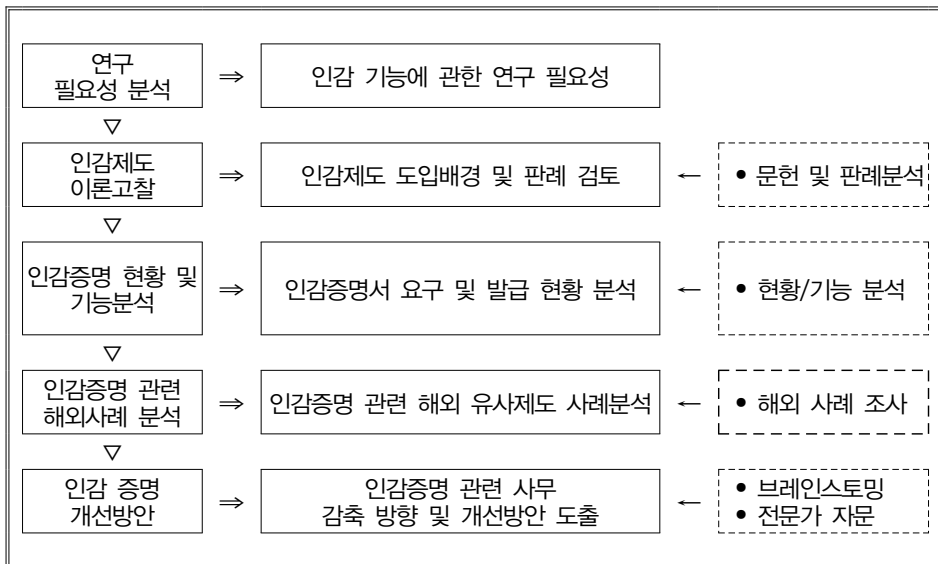
○ 분석방법 : 문헌분석

- 대상국가 : 일본, 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
- 분석내용
 - 유사제도 시행여부
 - 유사제도 시행시 법·제도·기능·운영 등 현황
 - 자동차등록사례 심화분석

제3절 연구의 체계

-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

<그림 1-1> 연구의 구성체계



제2장 인감증명제도 도입배경 및 판례 검토

- 제1절 인감제도 도입배경
- 제2절 인감 증명서 요구제도 고찰
- 제3절 인감증명 관련 판례 동향 검토
- 제4절 인감증명제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



제2장

인감증명제도 도입배경 및 판례 검토

제1절 인감제도 도입배경

1. 인감제도 도입 계기

- 역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왕의 옥새 또는 서간 등에 날인하는 낙관 등 인장(印章) 문화가 존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인장을 사용하는 관습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음(목영만, 1991)
-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국가의 상징(象徴)으로 문장과 징표(mascot)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음(이대영, 2002: 84-85)
 - 고조선의 단군 조선에 나오는 천부인, 고려의 금척, 조선시대의 옥새가 국가의 신증(神證)으로 사용되었음.
 - 이 외에도 어표(御票), 수기(手記), 수결(手決) 등의 표시가 사용되었는데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서명(sign)이 통용되었음.
-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관공서의 권위와 신증(信證)을 위하여 관인을 제정하였는데 등급에 따라 관인의 촌수(크기)를 달리하였음. 조선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예전의 용인규정에서“각 관아에는 신증(神證)으로 관인을 사용하는데 당상관과 당하관 등의 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사용한다. 이들 관인에는 촌수의 차등이 있으니… 경외일품의 기관에서는 29분의 인장을…”라고 규정하였음(이대영, 2002: 85)
- 인감증명제도를 제도화시킨 나라는 일본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의 인감증명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용 인감증명제도는 일본에서 1871년(明治4年)에 물품매매약정서에 관하여 庄屋 등에 印鑑帳을 설치하도록 한 太政官布告로 시작됨(태정관포고 제456호)

- 그 후 1878년(明治11年) 태정관포고 제312호에 의해 達縣官職制改定하면서 戶長을 경유하여, 市町村에서 인감증명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음(1888년, 明治21年)
- 한편, 법인용 인감증명제도는 비송사건절차법의 제정에 기원함(明治 32. 6.6 民刑 제975호 司法次官補 通牒 入江一郎 외 3인 編 「條解 非訟事件手法」, 帝國判例法規出版社, 1963. 471面에서 재인용; 김병두, 2006: 221)
-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제도를 실시한 것은 1914년에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도입한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인감증명규칙’이 그 효시가 되었음(김성태, 2010: 5)
- 동 규칙에 의하면 府·廳面사무소에서 인감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인감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인감증명이 없다면 토지 등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 그 후 인감증명규칙은 인감증명법(1961.9.23. 법률 제724호)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동법 및 동시행령(1962.6.12. 각령 제800호)에 의해 개인용 인감이 규율되었음
- 현재, 법률행위에 있어 인감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3국에 불과하며, 대만은 직접서명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음²⁾
-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인감증명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4년부터는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디지털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신봉근, 2010: 16)³⁾

2) 대만은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앙부처와 부동산 중개인 단체의 반발로 무산됨. 우선은 중앙부처에서는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주장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인 단체에서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만한 편리한 제도가 없다면 반발하였음(연합뉴스, 2012.08.29.).

- 일본의 신부동산등기법에서는 전자신청시에 디지털증명서(서면신청시에 인감증명서)외에,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명의인이 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식별정보를 통지하게 되는데(신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4호),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도입되었음(동법 제21조, 제22조)
- 디지털증명서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일반적인 본인확인의 수단에 추가하여, 온라인상에서도 통지가 가능한 등기절차 고유의 수단을 사용하여 등기의 무자의 본인확인을 더욱 확실히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음(異村美喜夫, 2003: 28)

2. 인감제도 변천과정

- 행정자치부 「인감증명사무편람(2015)」에 의하면 인감제도는 총 17차례 개정되었음. 여기서는 인감증명법을 기준으로 주요 제도변화만 정리하였음
 - “인감증명법” 제정 (’61.9.23.)
 - 1차 개정(’62.12.12.)
 - 인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감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감의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인감의 사용을 방지(사망·실종신고, 개인요구 불응시)
 - 시장·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 2차 개정(’77.12.31.)
 - 인감대장을 개인별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78. 9. 1 시행, 1차 경신)
 - 3차 개정(’91.1.14.)
 -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으로 인감대장을 주민등록과 분리(2차 경신, 현행)
-
- 3) 일본의 부동산등기 온라인신청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소에 한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온라인신청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22일부터 사이타마 지방법무국 아게오 출장소에서 처음 취급하기 시작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말에는 110개 정도의 등기소에서 온라인신청 취급이 가능해졌음(신봉근, 2010: 16)

인감대장 도입)

- 6차 개정('96.12.30.)
 - 인감의 대리 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 전국 확대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도 인감 신고 가능
- 7차 개정('97.12.17.)
 - 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감을 주민카드(주민등록증)에 수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수행
 -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시 신고된 인감도 말소 또는 재신고한 것으로 봄 ('98.4.1.시행).
- 8차 개정('99.1.21.)
 - 인감대리 신고시 보증인을 2인 이상에서 1인으로 함
- 9차 개정('99.5.24.)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규정에 의한 인감의 주민카드 수록 폐지
- 10차 개정('02.3.25.) ⇒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
 -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서류 규정
- 11차 개정('04.10.16.)
 - 인감증명 발급을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
 - 인감을 신고한 자가 국외이주 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현지이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신분을 정리한 날에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말소신고된 인감을 본인이 부활신청 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13차 개정('07.5.1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제2항 등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개정함

- 16차 개정('12.3.21.)
 -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대리인이 무인을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함(의원입법)
- 17차 개정('15.1.22.)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감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18차 개정('16.1.6.)
 -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으로만 규정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감증명은 지역사회가 협조하고 인구의 유동화가 적어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시대에서 생성되고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근래에 그 유용성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 인감증명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① 인감등록과 ② 인감사무를 관장하는 자가 인감등록을 하는 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가 형성된 초기에는 인감증명에 주민에 대한 국가 및 법의 後見的 역할이라는 요소가 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후견적 성격에서, 각종 재산적 거래에서 본인의 동일성을 추정하게 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그 성격이 轉化되고 있음
 - 즉,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병행하여 기존의 인감이 가지고 있던 후견적 성격은(즉, 국가에서 공증을 해준다고 볼 수 있음)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곡점은 간접증명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음. 즉, 인감증명이 서비스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인감 증명서 요구제도 고찰

1. 인감증명제도의 이해

□ 인감증명제도

○ 의의

- 인감이란, 개인의 도장을 행정청(시·군·구)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공무원이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

○ 인감증명사무 : 인감등록사무, 인감증명사무

- 인감등록사무 : 인감을 하는 때에 증명청 또는 등기소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본인인가(본인의 동일성), 인감등록의 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가(등록신청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인감등록사무에서는 본인신고의 원칙, 인장제출의 원칙, 등록의사 확인의 원칙이 지배함
- 인감증명사무 :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으로 나눌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 개요

- 출원자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을 증명함
 - 법 개정('02.3.5) : 법의 목적 변경(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 ⇒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61.9.23. 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62.6.12. 제정)
- 사무관장기관(증명청) : 주소(거소지, 체류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 인감신고(주소지) : 본인신고 원칙,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인감증명서발급(전국 어디서나) : 본인발급 원칙, 대리발급 허용

- ‘03. 3.26.부터 신고된 인감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전국 발급
- 인감열람 : 본인 및 법령에 따른 권한이 있는 자로 제한됨

<그림 2-1> 인감증명제도 처리 절차

신고	관리	발급	대장이송
신고관할(증명청) ○ 본인신고(원칙) ○ 서면신고(예외). ※ 시행령에 규정된 신분증(6종) ※ 신분별 인감대장 구분 작성(4종)	변경 등 ○ 인감도장 변경 (증명청) ○ 본인의 발급금지의 신청 및 해제 -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발급기관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종류 -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 특이사항 - 매도용은 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	증명청 ○ 신고인의 주소(거소, 체류지) 변경시 - 수기 인감대장 이송

□ 인감증명제도의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제12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으로 인감증명 발급사무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인감증명법령상 본인의사 확인 기능⁴⁾, 신고된 인영과 사용하려는 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능관련 규정⁵⁾이 없기 때문에 인감관련 남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⁶⁾

4)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97.4.12) : 제15조의 인감증명의 거부 요건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할 것’ 관련 규정 삭제하였음

5)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02.12.31) : 제15조의 인감증명의 거부 요건에서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인장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 관련 규정 삭제하였음

6) 상기의 시행령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인감증명 주요 활용분야(현행법령) : 관할부처 주장

가. 부동산 및 재산권 관련

○ 부동산 이전 등기 대리신청 시

-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7)
- 필요사무 : 부동산 이전 등기시 신고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 요구사유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자동차 이전등록·말소 대리신청 시

- 근거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필요사무 :
 - ① 이전등록 :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② 말소신청 :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요구사유 :
 - ① 이전등록 :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해 주는 양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필요
 - ② 말소신청 : 자동차 소유자의 처분의사 확인하기 위함

○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행위 시⁸⁾

- 7)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시행에 맞춰 이를 반영한 규칙으로 개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8)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부동산거래소의 중개인과의 인터뷰를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재개발 등으로 거래 활발)). 인터뷰 일자: 2016년 7월 29일로 3호선 홍제역 인근의 부동산거래업소 3군데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첫째, 인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절대적이라고 답하고 있음. 둘째, 인감에 대한 부동산관련협회의 입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협회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방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셋째, 최근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시스템이 있는 건 알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시스템에 익숙치 않고 부동산중개인들도 협회 주관 하에 교육을 받지만 평소와 달리 익숙치 않아서 사용하지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필요사무 :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증명서류에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소송행위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대리에 대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반드시 필요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요청 시
- 근거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 필요사무 :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 열람·정보 제공 요청
 - 요구사유 :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열람, 제공 요청시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등 첨부 필요

나. 가족관계 관련

- 가족관계등록 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필요사무 :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고인 신분확인
 - 요구사유 : 혼인, 이혼, 입양, 파양과 같이 국민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신고에 있어서 신고인이 불출석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서에 인감 날인시 신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 필요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지원)을 위해 유족간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시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넷째, 왜 인감이 절대적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령, 부동산 계약시 계약자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해야 하고 이후 여러 번 만나야 하는데 요즘 같이 바쁜 시기에 한번만 만나면 됐지 이후 여러 번 만나는 것은 불편해서 현실에 적용키 힘들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 그것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인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감 폐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폐지는 불가하며, 계약당사자들이 몹시 불편해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공증 등의 방법은 더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고 있어 인감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다고 판단됨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 필요사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지원)과 관련하여 유족간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시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위임시 부당하게 위임한 것인지 등을 명확하기 위해 필요

○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의 대리 신청 시

- 근거법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
- 필요사무 :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청구 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유족 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로금 수급을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 선정서 제출시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 시

- 근거법령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필요사무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신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 대리 참석 시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0조
- 필요사무 :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고인 신분확인
- 요구사유 : 혼인, 이혼, 입양, 파양과 같이 국민의 신분관계를 변동시키는 신고에 있어서 신고인이 불출석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서에 인감 날인시 신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 필요

다. 인허가·신고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광업등록 신청 시

- 근거법령 : 광업등록령 제20조
- 필요사무 : 광업등록 신청시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광업등록 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등록의무자의 진정성에 대한 의사표시 확인 및 저당권설정 사실 여부 등의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당사자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대체 기능(광업등록령 제20조 제5항)

○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매수 청구 시

- 근거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필요사무 :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요구사유 : 전원개발사업자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 가액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공유토지분할로 공유자가 청산금을 수령할 때

- 근거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2조
- 필요사무 :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는 청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요구사유 :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함

○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시

- 근거법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 필요사무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대상토지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의 보상 청구시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보상금 청구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함

○ 특허권 신청 시

- 근거법령 :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
- 필요사무 : 특허권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특허권은 그 가치면에 있어서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국제적인 통용력 등에 있어서 개인재산 측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에 특허권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은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임

○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신청 시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필요사무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시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제출
- 요구사유 :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추진과정상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며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서면동의 및 개별 인감증명서 첨부 불가피

○ 공유림 또는 사유림 매수 시

- 근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필요사무 : 공유림 또는 사유림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임

○ 항공기등록 신청 시

- 근거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
- 필요사무 : 항공기 신규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임차권 설정/저당권 설정 등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항공기 등록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신청인 특히 등록의무자의 진정한 의사의 확인 또는 등록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할 때나 등록 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할 때 승낙자

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임

○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시

- 근거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필요사무 : 어업권 이전 인가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첨부
토록 한 것은 어업권이 물권적 성격으로써 어업권이전(매매 등)으로 인한
어업인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것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 근거법령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필요사무 :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
자는 계약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납부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
부하지 않은 자가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 양도로 인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 승계 시

-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 필요사무 : 양도로 인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 승계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자 지위승계신
고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양도인의 출석 대신에 인감증명
서를 첨부

라. 대리인 위임 관련

○ 대리인 촉탁에 의한 공증증서 작성 시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경우

- 근거법령 : 공증인법 제31조 2항
- 필요사무 :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 작성시 인감증명을 첨부
- 요구사유 :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증서

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24호의 2서식
 - 필요사무 : 국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국세환급금의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본인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도인의 인감증명의 첨부가 필요함
- 공중보건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신청 시
 - 근거법령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필요사무 : 공중보건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신청시 인감증명을 첨부
 - 요구사유 :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 대리인에 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 시
 - 근거법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필요사무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시 수급권자 본인의 위임의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령계좌번호 변경 시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필요사무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령계좌번호 변경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첨부

- 주택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심사·조정 대리 신청 시
 - 근거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 필요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주택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신청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인감증명서 첨부이 불가피함.
- 대리인이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 근거법령 : 공탁규칙 제37조
 - 필요사무 : 공탁물 출급·회수청권자의 대리인 권한 증명의 진정성 확인
 - 요구사유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함.
- 대리인이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담보권이전·연장·말소 시
 -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필요사무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요구사유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에 대하여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등기필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 그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이 필요함

마. 저당권 설정 관련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 폐기 시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 2

- 필요사무 : 저당권의 기계기구목록 기재의 변경등기신청시 저당권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 첨부
 - 요구사유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등기신청이므로 저당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함
-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 시
- 근거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 필요사무 :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신청시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 요구사유 :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등록의무자의 진정성에 대한 의사표시 확인 및 저당권설정 사실 여부 등의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권리 변경 등록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
- 유료도로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처리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신청 시
- 근거법령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 필요사무 : 유료도로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처리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록시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유료도로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처리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등록할 경우, 등록의무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는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의 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토록 하여, 등록의무자의 동의 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함

바. 계약 관련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입찰방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마. 인감증명서

9) 광역시도 가운데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인터뷰 일자 2016년 8월 3일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첫째, 인감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감제도가 편리하며, 상대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일일이 민원인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측면에서 불편해서 의외로 인감이 편리해서 인감에 대한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하고 있음. 즉, 장애인 및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인감의 편리성이 발급을 부채질하고 있음. 둘째, 행정기관에서 인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필요없다고 답하고 있음. 즉, 기존의 조례 등이 잔존하고 이와 더불어 관행 등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다고 하고 있음. 셋째,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령 업무를 맡게 되면 편람 등을 보고 업무를 숙지하지만 의외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지침 등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인감을 발급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음. 넷째, 인감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의 굳어진 관행으로 일시에 제도를 없앤다면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음. 실례로 대출 등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정보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인감발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자동차 관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못하도록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다섯째, 인감의 거래의사 공증기능에 대해서는 사적거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인감동일성 여부의 발급은 나름 타당하나, 거래의사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에 안내문구를 통해 거래의사 보증기능이 없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은 어떠한 물음에 대해 시도 인감담당 TF를 구성해서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면 바람직한 인감증명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음.

-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바. 인감증명서
-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마. 인감증명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6조(주식양도증서)
 -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 국공채, 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 갈음하려고 할 때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필요사무 : 국공채, 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 갈음하려고 할 때 발주기관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요구사유 : 국공채, 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갈음하려고 할 경우 계약 상대자 의사에 대한 진정성의 확보와 계약의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입찰서에 인감의 날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됨
-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6조
 - 필요사무 :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증명서면이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 요구사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경우 그 서면에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 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바, 그 사실을 확인한 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의 제출은 필수적임
- 영업자(소금제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응급의료 서비

스 제공자, 이송업, 공중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신고 시

- 근거법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필요사무 : 영업자 지위 승계시 양도를 증빙할 수 있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양도인의 출석 대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

○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시

- 근거법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필요사무 :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을 취소할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진정한 취소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함

○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시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필요사무 :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 요구사유 : 지원 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함

○ 기부에 의한 의료법인 설립 시

-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 필요사무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취임예정자를 증명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을 첨부
- 요구사유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 기부자의 기부사실을 증명함. 또한, 임원취임예정자의 임원 취임 의사를 증명하며, 추후 법인의 운영에 있어 이사회 의사결정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함

2. 인감증명과 유사제도 비교

-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공증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행정청에 신고된 본인 고유의 서명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으로써, 인감증명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음
- 공증제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써, 공증인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법률행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제도임
 - 인감증명이 없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공증제도를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사적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각종 거래시에 주로 쓰여지고 있음

<표 2-1> 인감증명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구분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공증제도
의의	- 행정청에 신고된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	- 행정청에 신고된 본인 고유의 서명사실을 확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
법적 근거	인감증명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공증인법
주무기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업무담당자	일선공무원	일선공무원	공증인
주요 기능	-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을 증명	- 행정청에 신고한 본인서명을 증명	- 공증인을 통한 법률행위 확인
활용분야	- 부동산거래 - 자동차등록·이전 - 각종 등기 업무 - 법인관련 업무	좌동	-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 변제 계약 등 집행증서 - 건물임대차, 유언, 협의 이혼 등 법률행위
문제점	- 대리발급에 의한 각종 범죄 악용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현재 활용분야가 제한적	- 비대면 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작성 및 비치, 의사록 부실인증 등 문제 발생

3. 기존 연구의 검토

- 인감증명 관련 기존 연구내용들은 주로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본인추정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지는 대표적인 3명의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함¹⁰⁾
- 김병두(2004)는 과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그 기관에 이미 제출된 인감과 증명을 요하는 인영의 일치를 조회하는 직접증명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발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부담이 문제되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담당공무원이 인영조회를 하지 않고 발부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논의를 전개함
 - 이 연구에서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당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인감증명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 공증제도 또는 전자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인용 인감의 폐지에는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그 폐지가 용이한 법인인감증명의 폐지를 먼저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음
- 남효순(2006)은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인감증명법에 대한 본인추정력을 상실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실인과 그 밖의 모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 직접증명방식보다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인감증명은 존재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인감증명법은 인영증명의 방식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의 본질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증명방

10) 2명의 학자는 논리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사전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김병두 교수와의 유선 대화를 통해 확인하였음

식에서도 인감증명서의 신청인본인추정력은 인영증명과는 관계없이 본인 확인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 김성태(2010)는 그동안 정부가 인감증명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라는 논리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편방안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인감증명제도가 지금까지 담당해오면서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인증제도, 전자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제도 이용 확대 추진, 서명문화 정착 등의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4. 그간 정부별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논의

-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논의는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각 정부별 인감증명제도 폐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김성태, 2010: 9-13)
 - 문민정부 : 1993년 문민정부시대의 행정쇄신위원회는 인감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1914년 처음 시행된 뒤로 약 8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문민정부에 이르러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됨
 - 문민정부 당시 빈번한 인감사고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공무원 중심으로 인감증명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국민의 정부 : 국민의 정부는 2002년 10월말 전자민원(G4C)시스템을 구축해 ‘안방민원’ 시대를 열게 됨
 -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사건이 빈발하자 2002년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0조에 인감증명발급담당직원을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구상권 등에 대하여 1억원 정도의 책임배상보험 등 가입하도록 하였고, 본의 아닌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 발급시에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우편, 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못함
 - 국민의 정부 당시에 도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사건이 빈발했지만, 인감증명에 대한 인터넷 발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단기적인 차원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수동적인 대안만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음
- 참여정부 : 2006년 상반기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 조례·규칙, 훈령·예규 등의 각종 규정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며, 아울러 사안별로 인감증명요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재검토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결국엔 인감증명을 폐지시키지 못하였음
 -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인감증명제도 폐지계획은 참여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되어 인감증명 폐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
- 이명박 정부 : 2009년 3월 인감제도 폐지를 위한 T/F팀 구성함
 - 같은 해 5~6월에 국민인식 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감증명 개편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 7월에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자료에서 1단계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과 2단계 “대체수단 마련 후 인감 증명과 병행, 5년 내 인감증명 폐지”라는 인감증명제도를 개편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실

질적으로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 못함

- 이명박 정부에서는 1단계로 오·남용 폐해에 따른 인감사무 감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2월에는 중앙부처 총 209종 인감사무 중 125종 (60%) 감축하였음
 - 2단계로 인감증명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하였음. 2012년 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도입하게 되었음¹¹⁾
- 역대 정부별로 인감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며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나, 폐지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걸림들은 국민들 사이에 이미 굳어진 관행과 인감에 대한 과도한 오신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인감증명제도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대리에 대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소명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체수단인 공증제도의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는 등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편할 수 있게 된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면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 논의의 힘을 잃었다고 판단됨
- 인감폐지와 관련되어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의견대립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가 가장 활발했었던 2009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찬성측은 국민생활에 불편주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측은 인감제 만큼 신분 확인할 안전한 장치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

11) 국회의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에 대한 소관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인감증명 대신 직접 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인감의 제작·보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대리발급 등을 통한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의 직접 서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장애인 등 거동불능자의 경우 확인서를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거동불능자의 경우 인감증명을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보편화될 경우 거동불능자의 경우도 필요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12.23.).

- ▶ 인감증명제는 이제 폐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2009년 내에 60% 줄이고, 앞으로 5년 안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게 골자임
 - 정부쪽에서는 인감증명제 폐지를 계기로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인한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음
 - 매년 약 40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만 연평균 인감 사고 건수는 19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 방안은 혼란과 시행착오만 일으킬 게 뻔하다고 지적
 - 일각에서는 인감증명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관계의 위조나 조작 문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
 - 당시 한나라당까지 이번 발표에 당 측 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감증명제 폐지안에 반대하고 나섰었음
 - 인감 폐지문제는 지난 2006년에도 논의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을 빚은 끝에 무산된 바 있음
 - 정부는 2010년부터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인감증명을 대신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음
 - 문제는 이런 수단으로도 과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는 점이랄 수 있음
- 인감증명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 분석
 - ▶ 찬성 측 : 국민생활에 불편 끼치고 유지비 또한 엄청나게 듬
- 인감증명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1914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

본인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선인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유지비용 또한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꼬집음
- 국민들의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가 한 해 2500억원에 이르며, 전국 3850개 읍·면·동 사무소의 발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연간 2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임
- 게다가 현행 간접증명방식은 인감제도 순기능의 하나인 인감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 기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위·변조 가능성에 노출돼 있어 법적 분쟁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특히 “인감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뿐이며 미국 유럽 등은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도장은 본인 서명으로 계약을 매듭짓는 국제 관행과도 어긋나며 인감증명제는 외국인의 국내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 반대 측 : 신분 확인 위해 현행 인감제 만한 수단 찾기 어려움
-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매년 약 40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만 연평균 인감 사고건수는 19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인감증명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
- 인감제도를 폐지하면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민간에 위임돼야 하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
 - 이 경우 당장 공증인 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것임
- 이들은 또 “인감증명서 위·변조 사고는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해 당사자는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공무원과 그 사용자, 즉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된다”며 인감제 폐지의 이유

는 이러한 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

- 현행 인감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이며 폐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
 - ▶ 당시 정책적 방향으로 인감제 폐지에 앞서 대체수단에 대한 신뢰부터 확보해야 함으로 결론이 모아짐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사거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감제도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008년에만 무려 4846만통의 각종 인감이 발급된 데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의 불편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임
- 인감증명제를 만든 일본조차 전자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우리도 적극 참고할 필요도 있음
- 문제는 인감증명제 없이 거래를 안전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점임
- 지난 2006년에도 인감 폐지문제가 논의됐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음
- 인감제 폐지에 앞서 대체 수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부터 우선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임
- 부동산거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제도와 전자인증제도, 서명제도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부터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임
- 전자위임장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전자기반을 갖추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이런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인감을 요구하는 법령과 사무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할 것임

제3절 인감증명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인감의 직접증명방식과 간접증명방식 관련 판례 비교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50185 판결 : 직접증명방식 시절의 판결

○ 판결요지

- 허위의 인감증명이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은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함

○ 공무원의 책임범위

- 직접증명방식으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

○ 인감증명방식에 대한 법원의 견해

- 직접증명방식에 의거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 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

□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간접증명방식 전환후의 판결

○ 판결요지

-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함

○ 공무원의 책임범위

-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

○ 인감증명방식에 대한 법원의 견해

- 인감증명방식이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이 발급을 거부하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감증명의 발급절차 또는 그 기능에 종전과 다른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검토 결과

- 대법원 판례요지는 인감증명의 기능에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기능 외에 본인확인, 본인의사확인 기능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이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감증명서 자체에서 본인의사 확인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가지고 발급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음
- 이른바 간접증명방식 아래에서의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만 증명할 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것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表現代理)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인감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음

- 즉, 법원은 거래행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공무원인 정부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른 인감을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여짐
-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공간의 오윤식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를 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¹²⁾

이처럼 간접증명방식으로 인감증명제도가 변경된 상황에서 인감증명제도는 인감 자체의 동일성(①)을 증명하는 기능은 갖고 있을지라도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기능'(②)은 실질적으로 갖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기능은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결은 그와 같이 변화된 인감증명제도의 현실 내재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뒷떨어진 판결로 심히 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전제 위에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인감증명제도가 부동산 거래 등에서 갖는 중요성,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변화된 인감증명제도를 반영시켜 머지않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016. 6. 23.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오윤식

12) 이에 관련된 자문의견은 PDF 파일로 직인을 받은 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2. 간접증명방식의 본인 추정력 한계점

- 우리나라 인감증명방식이 2002년을 기점으로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됨
 - 우리나라는 각종 인감증명사고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례¹³⁾를 들어 인감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인감증명의 방법이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음
 - 우선, 법인인감과 관련하여 1996.3.19. 상업등기전산화의 일환으로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인감처리시스템이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에 인감증명 발급업무의 신속한 해결 외에 인영조회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국 개인용 인감도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됨
- 김병두(2008)는 인감의 간접증명방식의 본인 추정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간접증명방식의 채택으로 인감증명의 사실상의 추정력은 약화되었고, 인감증명서 발급단계에서의 본인확인의 주의의무도 저하되었음
 - 증명청의 인감증명에 관한 책임을 면책하려는 의도에서 간접증명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담당자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의 감경이 합목적적인 것임
 - 종래 직접증명방식하에서 대법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시하였음
- 그러나 간접증명방식의 채택으로 인감증명의 사실상의 추정력이 약화되었으므로, 대법원의 그러한 추정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담당자의 주의의

13) 일본은 1970년대 초에 “인감등록은 엄격하게 증명은 간결하게”라는 원칙으로 표방되면서 그 결과 인감증명을 위해 증명청등이 인감조회를 하던 직접증명방식에서 거래당사자 등이 인감조회를 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인감증명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김병두, 2004)

무는 인감증명의 사실상의 추정력의 약화에 부합하기 때문임

- 따라서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인감증명법령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사무의 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담당자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간접증명방식을 취하는 인감증명제도는 그 본질적인 역할의 한계점 노정
 - 인감증명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감증명은 일정한 제도적 전제와 결합하여 발전하였는데, 사회기반의 변화와 인감증명사무의 증가로 인해 인감증명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임
 - 근래에 인감증명사무의 간이·신속한 처리를 지향하는 새로운 인감증명방식은 그 고유의 증명기능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간접증명방식의 본인 확인 추정 곤란
 - 간접증명방식이 직접증명방식에 비하여 증명방법과 증명서의 교부대상에서 차이가 있고, 그 밖의 절차는 동일함
 - 즉, 직접증명방식에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야 하지만, 간접증명방식에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교부되지 않아도 됨
 - 간접증명방식에서는 인영의 복사본을 공증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본인이라고 증명하는 기능은 없어졌고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증명기능은 본질적으로 바뀌었음
 - 현재 인감증명은 그 신청건수에 비하여 발급되는 통수가 상당하여 인감증명서가 대량으로 발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부정으로 유통되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자에게 속하게 되면 거기에 찍힌 인영에 맞추어 새로이 인장을 새기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 매우 용이
 - ⇒ 간접증명방식에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본인이라고 추정하기 곤란
-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인감증명의 전제가 흔들리고 증명청의 사무능력의 한계에 다다름

-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및 그 유동화와 법인수의 증가 등으로 인감의 등록 또는 증명에서 본인의 동일성 및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
- 인감증명사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영의 조회는 격증하는 다수의 증명신청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곤란한 지경에 이미 다다랐던 것을 반영한 것임
 - ⇒ 그 결과 간접증명방식에서 본인확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는 직접증명방식에서 인영조회를 하는 경우에 비하면 낮게 되었음
 - ⇒ 인영의 동일성의 확인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인감증명사무는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본질적으로는 국가배상책임으로부터 증명청은 해방되었음(김병두, 2004 : 266)

3. 기타 인감증명의 문제점¹⁴⁾

이익교량원칙에 위배

- 일단 발행된 인감증명은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 내지 본인의 진정한 의사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효력을 갖는 바, 저렴한 수수료(현재 600원) 지불에 비해 거래의 성립 및 효력을 받게 되는 민원인의 혜택은 매우 큼
- 소위 비용과 편익 사이의 이익교량에 있어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인감증명 사고로 인해 행정기관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익교량상의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

사경제의 자율성 침해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인간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상호 자기의사에

14) 인감증명제도 문제점은 김익식·이승중(1993)의 “인감증명제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와 이병욱(2010)의 “인감증명제도 대체방안에 관한 연구(上)”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책임 하에 이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거래당사자가 본인 및 본인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나,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이같은 당사자들간의 확인까지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단순한 증명 하나가 거래관계의 핵심인 본인 및 본인의사 여부를 확인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사적 자치영역에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침투하여 사경제 질서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

□ 담당공무원의 책임부담의 한계노정

- 인감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하고 자칫 실수나 착오가 있을 경우 인감사고로 연결될 경우 그 파장은 말할 수 없이 큼
- 현재 일선 증명청의 인감담당자 대부분이 신규직원으로 경력이 일천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일선 증명청의 인력감축으로 인감증명 발급에만 전담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제대로 익히기 어려운 환경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감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직원들은 인감증명사무를 기피하고 있음

□ 규제 : 환경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적합

-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서명 인증 등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상의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에만 존재하는 인감증명제도를 21세기에 계속 존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하는 첨단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그만큼 인감증명제도의 유용성은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각종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결제 등에서 인감대신 서명사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인감증명 대신에 전자서명 인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음
-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자국에 없는 인감증명제도를 적용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강제할 때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함은 물론,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제4절 인감증명제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

- 앞서 제시한 인감증명제도의 변화, 인감증명의 제도적 문제점과 기존연구 검토, 인감관련 판례동향 검토, 간접증명방식의 본인추정의 한계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1. 오랜 관행으로 인한 인감폐지의 어려움

-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임
 - 현재 인감제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부동산등기 등 사적재산권에 대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학자들이 인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며, 단계적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인증제도, 전자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제도 이용 확대 추진, 서명문화 등 다른 대체수단이 정착한 이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2. 간접증명방식 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소재 불분명

- 과거 판례에서 보듯이 직접증명방식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였으나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 경향은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법의 기능명확화와 공무원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사료됨
- 따라서 간접증명방식 전환에 맞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법령에 인감증명은 거래의사까지 증명해주는 기능은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3. 인감증명서의 범죄악용으로 인한 보안방안 마련 필요

-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범죄가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자동차 명의 이전, 보험사 제출 등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총 21건으로 나타남(한라일보, 2016.03.14.)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받아서 불법도박사이트 계좌만 골라 약 2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세계일보, 2015.09.21.)
 - 유명배우 A군의 인감·전속계약서 위조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사장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뉴시스, 2015.12.11.)
 - 서울시 송파구 한 의료도매업체의 법인인감도장 위조한 뒤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법인 돈을 가로챈 혐의(내일신문, 2016.03.14.)
- 상기의 상황에서 인감증명서의 인영확인과 관련된 논의들이 제기(김진일·허준, 2015; 조인우, 2011)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여전히 보안상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임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강구

- 장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그동안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랜 거래관행이나 생소함 탓에 본인서명확인서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연합뉴스, 2015.12.15.)
- 인감증명 폐지와 기존 거래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 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서 민간 MOU체결이나 관련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함
- 또한,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책임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인감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하에서도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등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에 관한 증명청의 주의의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발생할 것임
 - 판례에서는 인감증명에서 본인확인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감증명으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증명청의 본인확인 의무와 별도의 의무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증명청의 본인확인 의무의 이행으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증명청의 공적 기능을 고려한 것일 뿐, 별도의 의무라고 볼 필요는 없음¹⁵⁾

15)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대판 1996.5.10., 95다34477, 공 1996, 1804). 동지의 판결, 대판 1995.8.22., 94다

<표 2-2>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법적 성격	• 증명제도 • 객관적 상황 + 가치	• 확인제도 • 객관적 상황
방식	• 등록	• 사실확인
편의성	• 적음	• 많음
국내적 보편성	• 많음	• 많음(가령, 수표)
국제적 보편성	• 적음(일본, 대만)	• 많음
제도운영	• 인감 사전 신고등록 • 인감 신고대장 관리 등	• 인감신고 및 대장관리 없음
절차의 간편성	• 복잡	• 간편
행정규제성	• 많음	• 적음
행정비용	• 인감대장 발급, 이송 등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 발생	• 인감대장 이송관리 없음
개인관리비용	• 인장제작, 관리비용	• 개인관리 비용없음
위·변조 여부	• 컴퓨터 인장제작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발생여지 많음	• 직접 방문, 서명(행위)으로 위·변조 발생여지 적음
주체 진정성 확보	• 적음	• 많음
대국민 서비스	• 적음 • 사무실 서비스만 가능	• 많음 • 찾아가는 서비스 가능

출처: 한국법제연구원(2009 : 14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있는 기명날인은 거래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자 당사자 동일성의 추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기초하여 더 나아가 거래당사자의 거래의사, 문서의 성립과 그 내용의 진정성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됨
- 인감증명서는 거래당사자의 동일성 등을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의 기명날인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증거보다 거래당사자의 거래의사, 문서의 성립과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더 강한 추정력을 갖음(남효순, 2006: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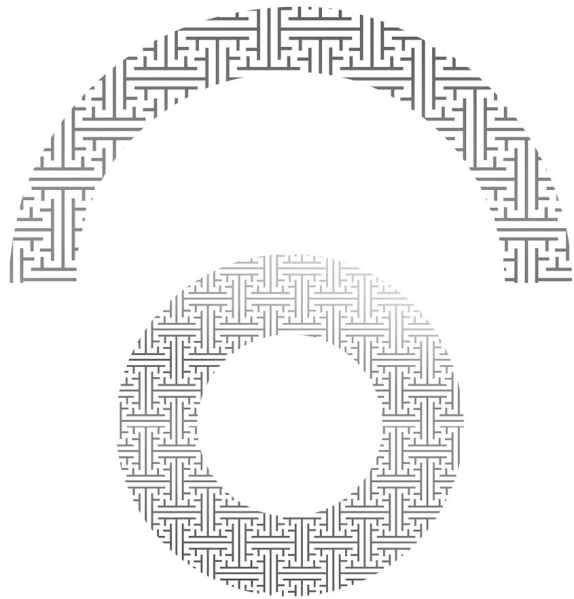
50328, 공 1995, 3237); 대판 1994.1.11., 93다50185(공 1994, 699).

- 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한 거래당사자의 동일성 등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 아닌 사실상의 추정에 지나지 않음(남효순, 2006: 64)
- ⇒ 인감증명제도하에서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일관된 견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등이 기존의 인감제도를 대체할 정도가 될 경우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관례의 변화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장

국내 인감증명 및 존치사무 현황 분석

- 제1절 국내 인감요구사무 감축 실태
- 제2절 국내 인감 신고 및 발급현황
- 제3절 국내 인감요구 존치사무 분석
- 제4절 현황분석의 시사점



제3장

국내 인감증명 및 존치사무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인감요구사무 감축 실태

1. 국내 인감요구사무 감축 개요

-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의 1단계로 2010.1.28. 중앙부처(22개 기관, 대법원 포함) 209개 인감사무 중 125종을 감축 인감증명 사무 감축과 관련하여 120종을 폐지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2012년 2단계 인감사무 감축을 추진하고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 2013년부터 1,732개 사무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음¹⁶⁾
 - 인감요구사무 감축은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하여 이 중 1,002개 사무를 감축(57.9%)하였음

2. 국내 인감요구사무 감축 현황

- 인감요구사무 총 1,732개 사무 중에서 1,002개 사무를 감축(57.9%)하였으며, 730개 사무는 존치(42.1%)하는 결정함
 - 감축율 : 관행(80.6%) > 지침(73.0%) > 관리규정(48.1%) 순
 - 존치율 : 법·시행령·규칙(100.0%) > 조례(57.6%) > 관리규정(51.9%) 순

16) 1단계는 먼저 중앙부처만을 대상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지침, 기타로 분류한 후, 사무수를 기준으로 감축한 결과이며, 2단계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단체의 사무를 감축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음. 따라서 2단계에서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해서 감축한 결과라 1단계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표 3-1>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전체)

(단위 : 개수)

구 분	계	상위법령			예규	조례	관리 규정	지침	관행	비고
		법	령	규칙						
계	1,732	15	43	319	9	33	208	111	994	-
감축	1,002	0	0	0	6	14	100	81	801	-
규정	48	0	0	0	0	0	0	12	36	-
존치	682	15	43	319	3	19	108	18	157	-
감축률	57.9	0.0	0.0	0.0	66.7	42.4	48.1	73.0	80.6	-
존치률	42.1	100.0	100.0	100.0	33.3	57.6	51.9	27.0	19.4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 공공기관별로 인감요구사무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총 335개 사무 중에서 139개 사무를 감축(41.5%)하였으며, 196개 사무는 존치(58.5%)하는 결정함
 - 감축율 : 관행(71.1%) > 예규(57.1%) > 관리규정(43.8%) 순
 - 존치율 : 법·시행령·규칙(100.0%) > 지침(60.0%) > 관리규정(56.3%) 순

<표 3-2>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정부)

(단위 : 개수)

구 분	계	상위법령			예규	조례	관리 규정	지침	관행	비고
		법	령	규칙						
계	335	3	1	92	7	0	64	40	128	-
감축	139	-	-	-	4	-	28	16	91	-
규정	28	-	-	-	-	-	-	12	16	-
존치	168	3	1	92	3	-	36	12	21	-
감축율	41.5	0.0	0.0	0.0	57.1	0.0	43.8	40.0	71.1	-
존치율	58.5	100.0	100.0	100.0	42.9	0.0	56.3	60.0	28.9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 교육청에서는 총 474개 사무 중에서 330개 사무를 감축(69.6%)하였으며, 144개 사무는 존치(30.4%)하는 결정함

- 감축율 : 지침(98.2%) > 관행(91.1%) > 관리규정(50.0%) 순
- 존치율 : 시행령·규칙(100.0%) > 관리규정(50.0%) > 관행(8.9%) 순

<표 3-3>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교육청)

(단위 : 개수)

구 분	계	상위법령			예규	조례	관리 규정	지침	관행	비고
		법	령	규칙						
계	474	0	22	87	0	13	2	57	293	-
감축	330	-	-	-	-	6	1	56	267	-
규정	2	-	-	-	-	-	-	-	2	-
존치	142	-	22	87	-	7	1	1	24	-
감축율	69.6	0.0	0.0	0.0	0.0	46.2	50.0	98.2	91.1	-
존치율	30.4	0.0	100.0	100.0	0.0	0.0	50.0	1.8	8.9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 시·도에서는 총 923개 사무 중에서 533개 사무를 감축(57.7%)하였으며, 390개 사무는 존치(42.3%)하는 결정함
- 감축율 : 예규(100.0%) > 관행(77.3%) > 지침(64.3%) 순
- 존치율 : 법·시행령·규칙(100.0%) > 조례(60.0%) > 관리규정(50.0%) 순

<표 3-4> 인감요구사무 감축 및 규정마련(시·도)

(단위 : 개수)

구 분	계	상위법령			예규	조례	관리 규정	지침	관행	비고
		법	령	규칙						
계	923	12	20	140	2	20	142	14	573	-
감축	533	-	-	-	2	8	71	9	443	-
규정	18	-	-	-	-	-	-	-	18	-
존치	372	12	20	140	-	12	71	5	112	-
감축율	57.7	0.0	0.0	0.0	100.0	40.0	50.0	64.3	77.3	-
존치율	42.3	100.0	100.0	100.0	0.0	60.0	50.0	35.7	22.7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제2절 국내 인감 신고 및 발급현황

1. 인감 신고 현황

- 연간 인감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말 현재 인감 신고건수는 총 37,250천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인감 신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8.9%로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1.7%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음
 - 내국인 : 2010년 대비 2015년은 8.7% 증가, 평균 연간 1.7%씩 증가
 - 내국인 외 : 2010년 대비 2015년 36.8% 증가, 평균 연간 6.5%씩 증가

<표 3-5> 연간 인감 신고 현황

(단위 : 명)

년 도	계	내국인	내국인 외			
			소 계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2015	37,250,426	36,800,755	449,671	92,749	257,255	99,667
2014	36,618,810	36,190,674	428,136	82,159	255,584	90,393
2013	36,005,148	35,606,729	398,419	72,120	246,303	79,996
2012	35,467,852	35,080,554	387,298	64,706	249,104	73,488
2011	34,870,151	34,511,035	359,116	54,592	238,658	65,866
2010	34,198,577	33,869,961	328,616	43,129	226,972	58,515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 인감증명 발급 현황

연간 인감증명 발급 현황

- 연간 인감증명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말 현재 인감증명 발급건수는 총 25,744천 건이며, 발급통수는 총 43,199천 통으로 나타남
 - 인감 발급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0.5%로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0.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감 발급통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1.2%로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0.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감 발급건수와 발급통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원인으로는 2010년에는 인감사무 감축효과에 의한 것이고, 2012년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잠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3-6> 연간 인감증명 발급 현황

(단위 : 천건, 천통)

년도	발급건수(증감율)	발급통수(증감율)	비 고
2015	25,744(5.9%)	43,199(6.6%)	-
2014	24,304(5.3%)	40,528(1.8%)	-
2013	23,079(△3.8%)	39,814(△2.3%)	-
2012	23,994(△6.8%)	40,737(△5.1%)	부동산 침체
2011	25,742(0.5%)	42,912(0.6%)	-
2010	25,609(△7.2%)	42,668(△7.7%)	인감사무 감축효과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신청자별 인감증명 발급 현황

- 2015년말 현재 전체 발급 건수는 총 25,744천 건 중에서 본인발급 건수는 총 23,223천 건(90.2%)이며, 대리발급 건수는 2,521천 건(9.8%)으로 나타남
- 신청자별 인감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본인발급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대리발급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7> 연간 신청자별 인감증명 발급 현황

(단위 : 천건, 천통)

년도	전 체		본인발급			대리발급		
	건	통	건	통	발급%	건	통	발급%
2015	25,744	43,199	23,223	38,916	90.2%	2,521	4,283	9.8%
2014	24,304	40,528	21,830	36,351	89.8%	2,474	4,177	10.2%
2013	23,079	39,814	20,690	35,586	89.6%	2,389	4,228	10.4%
2012	23,994	40,737	21,409	36,163	89.2%	2,585	4,574	10.8%
2011	25,742	42,912	22,877	37,862	88.9%	2,865	5,050	11.1%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용도별 인감증명서 발급현황

- 일반용 : 발급건수-2010년 대비 11.3% 감소, 발급통수-2010년 대비 6.1% 감소
 - 연평균 발급건수 2.9% 감소, 발급통수 1.5% 감소
- 부동산매도용 : 발급건수-2010년 대비 33.4% 증가, 발급통수-2010년 대비 32.2% 증가
 - 연평균 발급건수 8.4% 증가, 발급통수 8.2% 증가
- 자동차매도용 : 발급건수-2014년 대비 6.0% 증가, 발급통수-2014년 대비 4.7% 증가
- 연간 용도별 인감증명서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발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동산매도용 발급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자동차매도용 발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3-8> 연간 용도별 인감증명서 발급현황

(단위 : 천건, 천통)

년도	전 체		일반용발급		부동산매도용 발급		자동차매도용	
	건	통	건	통	건	통	건	통
2015	25,744	43,199	21,185	38,439	2,493	2,627	2,066	2,133
2014	24,304	40,528	20,277	36,287	2,078	2,203	1,949	2,038
2013	23,079	39,814	21,317	37,946	1,762	1,868	-	-
2012	23,994	40,737	22,401	39,038	1,593	1,699	-	-
2011	25,742	42,912	23,873	40,925	1,869	1,987	-	-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제3절 국내 인감요구 존치사무 분석

1. 중앙부처 존치사무 현황분석

- 중앙부처의 총 196개 존치사무 중에서 본인(법인)증명 사무가 68개(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인등기(설립, 변경)사무가 40개(20.4%)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계약사무가 38개(19.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중앙부처 존치사무의 기능분석

기능	사무개수		상위법령			관리 규정	지침	예규	관행
	계	%	법	령	규칙				
공증업무	1	0.5%	1	-	-	-	-	-	-
대리인(위임인) 증명	12	6.1%	-	-	-	9	1	-	2
대출관련 업무	1	0.5%	-	-	-	1	-	-	-
대행계약	2	1.0%	-	-	2	-	-	-	-
법인등기(설립,변경)	40	20.4%	-	-	36	-	-	--	4
본인(법인)증명	68	34.7%	2	1	16	38	4	1	6
부동산매매	15	7.7%	-	-	5	3	6	-	1
분양(임대)계약	7	3.6%	-	-	7	-	-	-	-
위탁계약	1	0.5%	-	-	-	1	-	-	-
일반계약	38	19.4%	-	-	25	5	1	2	5
채권관련업무	8	4.1%	-	-	-	6	-	-	2
해약 또는 명의변경	3	1.5%	-	-	1	1	-	-	1
합계	196	100.0%	3	1	92	64	12	3	21

2. 시도교육청 존치사무 현황분석

- 시도교육청의 총 144개 존치사무 중에서 부동산매매 사무가 78개(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인등기(설립, 변경)사무가 32개(22.2%)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계약사무가 14개(9.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시도교육청 존치사무의 기능분석

기능	사무갯수		상위법령		조례	관리 규정	지침	관행
	계	%	령	규칙				
대부 및 사용허가계약	14	9.7%	-	3	5	-	-	6
법인등기(설립, 변경)	32	22.2%	15	5	-	2	1	9
본인(법인)확인	5	3.5%	1	-	2	-	-	2
부동산매매	78	54.2%	6	69	-	1	-	2
분양(임대)계약	1	0.7%	-	1	-	-	-	-
일반계약	4	2.8%	-	-	-	-	-	4
자동차매매	1	0.7%	-	-	-	-	-	1
채권관련업무	9	6.3%	-	9	-	-	-	-
합계	144	100.0%	22	87	7	3	1	24

3. 시도 존치사무 현황분석

-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총 390개 존치사무 중에서 부동산매매 사무가 95개 (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인등기(설립, 변경)사무가 83개 (21.3%)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양(임대)계약사무가 59개(15.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시도 지방자치단체 존치사무의 기능분석

기능	계	%	상위법령			조례	관리 규정	지침	관행
			법	령	규칙				
대리(위임)청약	3	0.8%	-	-	-	-	1	-	2
대리인(위임인)증명	5	1.3%	-	-	-	-	3	-	2
대부 및 사용허가계약	11	2.8%	-	-	-	-	6	-	5
대행계약	3	0.8%	-	-	-	-	1	-	2
법인등기(설립, 변경)	83	21.3%	2	-	72	-	1	-	8
보상금지급	20	5.1%	-	3	2	-	4	-	11
본인(법인)확인	44	11.3%	5	-	1	7	11	1	19
부동산매매	95	24.4%	5	17	55	-	10	-	8
분양(임대)계약	59	15.1%	-	-	6	3	36	2	12
연봉계약	2	0.5%	-	-	-	-	-	-	2
위탁계약	7	1.8%	-	-	-	2	4	-	1
일반계약	42	10.8%	-	-	1	-	8	-	33
해약 또는 명의변경	16	4.1%	-	-	3	-	4	2	7
합계	390	100.0%	12	20	140	12	89	5	112

제4절 현황분석의 시사점

1. 인감증명 관련 법령 정비 및 관계자의 인식제고 필요

- 이명박 정부에서 인감증명 사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을 실시하였으나, 발급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인감증명서 발급량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과 더불어 여전히 인감요구 사무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주로, 부동산거래, 자동차매매, 일반계약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해당됨
- 인감요구 사무는 주로 법, 시행령, 조례 등 어떠한 형식으로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인감증명 관련 법령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외에도 신규사무에 대한 인감증명 요구의 필요성을 판단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자(등기소, 자동차등록사업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 발급보다는 공증제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등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됨

2. 일반계약, 연봉계약, 대행계약 등 인감증명 폐지

-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일반계약, 연봉계약, 대행계약 등 관련 사무는 점차적으로 인감증명을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계약의 경우,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연간 세금납부서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충분히 확인가능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다른 대체방안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인감증명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부동산매매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또는 공증제도 도입

-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사적재산권에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부동산매매와 같은 사적재산 또는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는 거래 금액의 단위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인감증명서로만 본인의 거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임
- 특히, 특정자산에 대한 매매와 매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처럼 약식으로 거래성립을 하기 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또는 공증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대리인(위임인)증명 또는 대리(위임)계약에 대한 보안대책 필요

- 인감 관련 많은 범죄발생은 대리인(위임인) 증명 또는 대리(위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리인(위임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것은 본래 인감증명서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즉, 인감증명서의 본래 기능이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대리인(위임인)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리인(위임인)증명이나 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위임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안이 요구됨

5. 법인등기(설립, 변경) 관련 사무의 제도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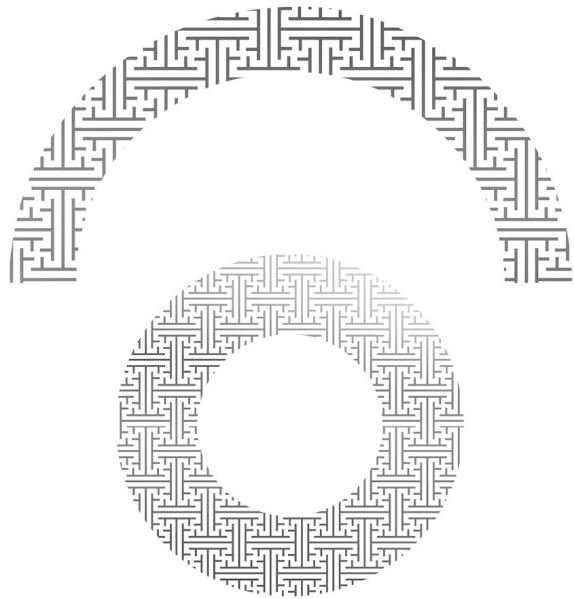
- 공공기관에서 법인증명사무가 다른 사무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아, 법인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와 법인을 쉽게 설립하도록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실가운데 법인 인감증명서를 악용하여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특히, 몇몇 법인의 재산이 없거나 법인 자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법인인감 도장자체가 개인 인감도장과는 달리 책임있는 관리가 어렵고, 또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시 법인인감도장만 있으며 발급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급받는 주체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법인인감증명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법인등기 사무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주무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함. 즉,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의 설립 및 변경, 법인의 활동 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임

제4장 인감증명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해외사례 선정 현황

제2절 각 국가별 인감증명 관련
유사제도 사례분석

제3절 해외사례 종합비교 및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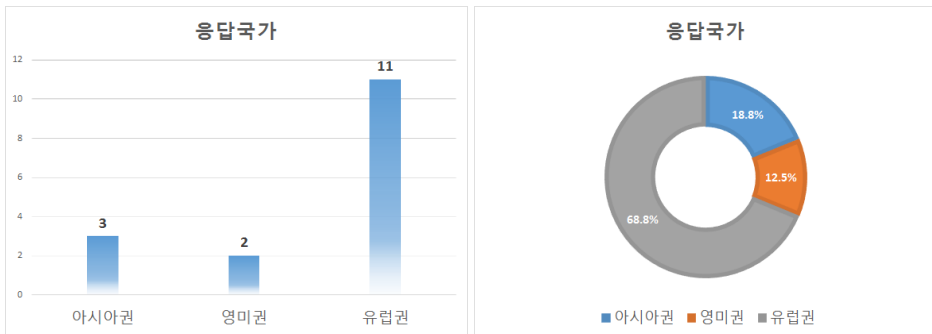
제4장

인감증명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해외사례 선정 현황

-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의 인감증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국의 제도현황을 파악하고자 각국의 대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2016년 4월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인감증명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응답하였음

〈그림 4-1〉 사례조사 응답국가



제2절 각 국가별 인감증명 관련 유사제도 사례분석

1. 아시아권 국가

중국 : 공증제도

○ 위임장에 공증

- 본인이 직접 공증처 방문해야 함
- 위임장 상의 서명은 공증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도 받아야 함

일본 : 인감제도

○ 인감제도 역사

- 근대화 이전부터 상업계약 시 널리 사용, 인감등록에 대한 공적근거는 1871년 태정관포고 제456호에 의함
- 시정촌제 이전이므로 각 지역의 유력인사가 인감장부를 만들고, 이에 주민들이 인감을 납인하고 보관하는 형식
- 1878년 태정관통지 제32호로 지방정부의 장이 담당하는 자치사무,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원칙 유지
- 직접증명방식으로 인해 담당직원 부담, 개별 시정촌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전국 통일적 인감등록법 제정 요구
- 1974년 이후 수년간 자치성 처리요령에 따라 전국 거의 모든 시정촌에서 조례 정비되어, 등록인영을 복사해주는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 일반화

○ 인감제도 현황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요강(1974.2.1. 자치진흥 제10호 자치성행정국 진흥과장에게서 각 도도부현 총부부장에 대한 통지)
- 실인과 인감등록증을 소지하는 자는 본인으로 함

- 실인이 납인된 문서에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문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담보하는 수단
-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공정증서 작성 등의 업무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인감등록증명서 제출 의무화

○ 인감제도 쟁점

- 일부 시에서 인감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인감 제작업체의 생존권 주장, 공무원들의 반발함
- 단기체재 외국인들도 인감제작 및 소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등기 등에 인감대신 공증서류를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

□ 대만 : 인감제도

○ 인감제도 근거

- 호정사무소의 인감등기처리규정(기능 및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인감제도 효력

- 인감증명은 개인이 행정기관에 등록한 인감과 동일한 도장임을 증명할 뿐, 본인의 촉탁사항 및 의사를 증명할 수는 없음
- 인감증명서의 효력 및 적용범위는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함
- 호정사무소는 등록된 인감의 일치성만 확인할 뿐 인감증명의 용도 및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및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증명문서가 될 수 없음

○ 인감증명 요구 사무

- ① 토지등기규정
- ② 지적정리조례실행세칙

- ③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도시재개발지역 장려 처리규정
- ④ 마주지역토지반환신청실시규정
- ⑤ 공증법
- ⑥ 공탁법시행세칙
- ⑦ 어선 선원관리규정
- ⑧ 선박등기법시행세칙
- ⑨ 정부기관이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 구매 처리규정
- ⑩ 신용협동조합법
- ⑪ 신용협동조합의 토지 및 건물명 변경규정
- ⑫ 공개발행주식회사 주식업무처리규정
- ⑬ 유치원 및 유치원의 기타 분반 설립 및 관리규정
- ⑭ 지역별 교육보호봉사 상호협조 실시규정

○ 인감제도 쟁점

- 인감도장 위조해 타인으로부터 도용된 사건이 발생
- 대만정부는 인감증명제도 폐지 및 대체 방안을 검토¹⁷⁾
 - 2003년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려고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무산
 - 2012년 인감증명제도를 다시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타 부처 반발로 무산
⇒ 폐지론 : 내정부는 과학기술 발달로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확인 가능하며, 최근 교육수준 향상으로 직접 서명 방식이 확산됨으로 폐지론 주장
⇒ 존치론 :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교통부 등 관련 민원 업무가 많은 부처에서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대출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지시 국민들의 대혼란 초래한다며 존치론 주장

17) 연합뉴스(2012.08.29)의 “대만, 일제시대 도입 인감제도 폐지 논란”에 대한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함.

2. 영미권 국가

영국 : 전자서명제도

- 전자서명제도 현황 : 전자서명, 고급전자서명
- 전자서명제도 근거 : 전자통신법, 전자서명규칙
- 전자서명제도 신원확인
 -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하에 tScheme이 인증기관 감독
- 전자서명제도 효력
 - 고급전자서명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의 서명효력(별도 입법불요)
 - 소송 상 증거자료로 인정(EU의 전자서명입법지침 수용)
- 전자서명제도 활용분야
 - 인증기관의 자발적 인정제도(voluntary licensing regime) 채택
 - 영국의 제도시행 기구로서 tScheme은 인증기관이 전자정부용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신원확인요건을 정함
 - 전자서명의 주용 활용은 인증기관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
 -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일반공중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영국에 설립된 인증기관의 활동 감독은 상무부장관 소관

아일랜드 : 사회보장번호(PPSN: 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 사회보장번호의 기능
 -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한 식별번호로서 모든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 가능
 - 2012년부터는 사회보장카드(PPS Card: 사회보장번호, 사진, 전자서명 등을 담고 있음) 형태로 개인에게 발급
- 사회보장번호의 관련 근거
 - 사회보장 및 연금 수정법(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amendment 2015)

○ 사회보장번호의 활용 분야

- 자유여행권(Free travel pass) 신청, 학생증(Pupil ID) 신청, 의료보험카드(Medical card) 신청, 어린이 예방접종(Child Immunization), 세금부과 및 주택용자 등, 주택보조금(Housing grants), 운전면허시험,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등

○ 사회보장번호의 쟁점

- 타인의 사회보장카드 정보를 도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 중

3. 유럽권 국가

스웨덴 : 신분증 서명제도

○ 신분증 서명제도 현황

- 경찰청이 여권 및 개인신분증에 관한 모든 정보 보유, 관리
- 여권,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의 수기 서명 정보 포함

○ 신분증 서명제도 근거 : 주재국 경찰청 개인보호 정책

○ 신분증 서명제도 보안

- 일반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 경우에도 영장이 필요

포르투갈 : 신분증 서명제도

○ 신분증 서명제도 확인방법

- 시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과 유사)을 제시하고, 시민증 앞면에 보이는 디지털 서명과 대조함으로써 이루어짐

○ 신분증 서명제도 근거 : 공증법

□ 네덜란드 : 신분증 서명제도

○ 신분증 서명제도 의의

- BSN(우리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주재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거주증 발급 시 부여) 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필 서명함

○ 신분증 서명제도 활용

- 정부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접근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디지털 ID와 기업정보 확인이 사용되고 있음
- DigiD(개인의 온라인 본인확인시스템), eHerkenning(기업의 온라인 인증시스템)
- 개인 또는 기업간 거래는 당사자의 자필서명으로 이루어짐
- 온라인상 주재국 정부의 업무에 접근하는 데 개인과 기업의 확인 및 인증을 위한 전자적 인증제도가 있음
- 정부기관 사이트 온라인 로그인 시 본인 또는 해당기업 인증
- 세금, 연금, 차량등록 등 개인정보확인을 위한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시험운영중인 Idensys는 기존 정부대상 개인 및 기업의 거래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 대 개인, 기업대 기업의 거래도 목표로 함

□ 폴란드 : 공증제도

○ 공증제도의 근거 : 공증법 제96-101

○ 공증제도의 기능

-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 서명해야 하며,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청에서 증명함
- 해외체류하는 경우는 자국대사관에서 증명하며, 문서에 서명이 되어있는 서류는 확인하지 않음

○ 공증제도의 활용분야

- 일반위임장 신청 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청 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행사 시
- 법인의 구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의 본인서명확인 필요 시
- 금융 문서의 본인 서명 확인 필요 시
- 연금(ZUS) 관련 서류 필요 시
-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과 관련된 서류 제출 시
- 서명 패턴 확인 필요 시
- 기타 관공서 등 요청시

독일 : 서명제도

- 서명제도의 목적 : 서명을 통해 본인 및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제도 운영
- 서명제도의 효력
 - 국가기관의 담당공무원 또는 공증인에게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신분증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 확인
 - 또한, 사적 거래에서도 서명방식(Schriftform)을 통한 법률적 효력의 유효성 규정(민법 제126조 제1항 및 제 2항, 제492조 제1항)
- 서명제도의 활용분야
 - 의사표시 및 진술, 상속계약서, 혼인계약서, 토지등기, 부동산물권변동 및 합의, 부동산분양계약, 상업등기, 보증계약, 채무약속, 채무승인, 전반적인 사문서의 인증, 집행문서의 작성, 합자회사의 설립, 유한회사의 지분의 양도, 주식회사의 총회의 결의 공증 등, 회사대표이사의 대리권 관련
- 서명제도의 쟁점
 - 1970년 1월 1일 공증법(Beurkundungsgesetz) 시행에 따라 종래 공증기관(구법원과 행정관청)의 공증권한이 약화
 - 공증인에게 권한이 집중됨. 주재국의 연방공증인규정(Bundesnotarordnung)은 공증인의 직무, 공증인회와 연방공증인연합회의 감독과 징계절차 등을 규정

- 공증인은 직무상의 위반 사항 발생시, 민사상의 개인배상책임 부과(연방공증인규정 제19조)

□ 스위스 : 신분증 서명제도

○ 신분증 서명제도 기능

- 18세 이후부터 신분증에 본인서명을 기입함. 서명 증명을 위한 관청 등록 의무는 없으며 서명이 있는 신분증 및 여권으로 본인 신분 확인.
-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 등을 위한 서명시 은행직원은 전자기기로 서류의 서명과 신분증(또는 여권)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진위를 확인하며 서명을 은행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 육안으로 확인함.
- 일반 공증인 및 주정부 소속 공증사무소에서 개인 서명에 대한 공증이 가능하며 공증법은 주(canton)별로 상이
- 신분증법에 따르면 신분증에 칩(chip) 또는 전자서명인증기능 포함 가능

○ 신분증 서명제도 활용분야

- 18세 이상 신분증 소지자는 각종 계약 체결시 서명 사용
- 연방신분증법은 신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서명 활용분야는 각 해당 법규(민법, 부동산법 등)에 별도로 서명 활용을 규정

□ 오스트리아 : 서명공증제도

○ 서명공증제도

- 공증인(Notar) 또는 구단위 법원(Bezirksgericht)에서 본인의 서명 사실 여부를 공증, 우리나라의 ‘본인서명사실확인’과 유사

○ 서명공증제도 근거

- 가족관계법 : 제 69조(서명의 진위) 연방법이나 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명의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서명이 의심스러워 다른 방법으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공무원은 서명공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명공증제도 기능

- 구매 및 판매 계약서 등 작성 시 공증인(Notar) 또는 구단위법원(Bezirksgericht)에서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

○ 서명공증제도 활용분야

- 부동산 계약, 유럽연합국외의 자동차 매매 계약, 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 회사 등록, 주택 및 동산 매매 계약 등

□ 이탈리아 : 다양한 인증·공인제도

○ 인증·공인제도

- 인증·공인제도(Autenticazione e legalizzazione), 사본인증제도(Autenticazione di copie),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Autenticazione delle sottoscrizioni), 자기증명서제도(Autocertificazioni)

○ 인증·공인제도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445호(2000.12.28.일자,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28 dicembre 2000, n.445)인 ‘행정적 서류화관련 단일 규정(Testo unico in materia di documentazione amministrativa)’

○ 인증·공인제도 의의

- 본인확인제도 : 본인확인제도는 공무소에서 확인한 증명으로서 서명한 사람이 제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면전에서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증명함
- 서명인증제도 : 서명인증제도는 서명의 진정성은 말할 것 없이 행위, 인증, 사본 위에 한 서명이 적법한 속성을 가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함
- 사진인증제도 : 사진인증제도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사진의 사람이 관련자와 동일한 인물임을 증명함
- 사본인증제도 : 인증공공기관에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제도

○ 사본인증제도 절차

- 사본인증기관으로는 신청서를 접수한 공공기관, 공증인, 법원의 공문서 기록계, 시청 행정실, 시장이 그 임무에 임명한 직원임
- 인증기관은 인증일자, 장소, 해당서류의 쪽수, 본인 성명, 직무/직책을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하며, 직인을 찍어야 함.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에 서명하여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절차

- 개인이 사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은 공증인, 법원의 공문서 기록계, 시청 행정실, 시장이 그 임무에 임명한 직원임
- 인증기관은 본인서명이 인증기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음과 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필, 인증 일자 및 장소, 인증자의 성명과 직책 그리고 서명, 직인을 날인함

○ 자기증명서제도 절차

- 공인 증서를 대체하는 신고로서, 특별한 형식없이 신청자는 서명하고, 팩스, 우편, 제3자 위임제출 등 제출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대통령령의 제46조에 엄격히 규정된 사실들 내에서 사적 자격으로 국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가능한 사실에는 출생지 및 생일, 거주지, 국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보유, 가족관계, 생존 증명, 자녀 출생, 배우자·조상·손자 사망, 공공행정기관 및 협회 등록사실, 전문업종 종사신고, 학위 및 성적 증명, 경력증명, 석사학위 및 각종 자격 증명, 소득증명, 감세대상증명, 과세번호,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기타 세무서 보유 자료, 실직현황, 연금수혜 및 분류번호, 학생 자격, 자연인 혹은 법인의 법적 대표자 자격, 후견인 자격, 재산관리인 자격, 사회적 협회 및 사단법인 등, 병역의무 이행관련 사항, 범죄경력증명, 민사행정절차 관련 증명서

○ 인증·공인제도 감시 및 통제

-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확인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범죄로 규정하여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되어 처벌되고, 허위증명으로 직업/영업을 하는

경우, 임시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인증·공인제도 쟁점

- 과거의 인증제도가 행정편의적이고 오래된 제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결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나 쟁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덴마크 : 공인인증제도

○ NEM ID :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및 본인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 NEM ID의 절차

- 15세 이상의 덴마크 시민권자나, 15세 이상의 외국인 (사진이 부착된 ID를 소지하고 있고 덴마크에 합법적인 체류허가가 되어 CPR (주민등록번호)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NEM ID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음
- 사용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PC가 있어야 하며, 발급 받은 NEM ID 코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보안카드와 같은 형태)와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됨

○ NEM ID의 활용분야

- 인터넷에서 보안 로그인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बैं킹을 할 때 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서명을 대신함
- 온라인 बैं킹 로그인, 세금 기록 등 개인 정보 확인, 인터넷 결제, 학교 입학 신청, 공과금 납부, 전자 서명 (본인인증), 외국인 체류허가증 온라인 신청, 그밖에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 및 본인의 의사를 확인

□ 핀란드 : 위임장 활용

○ 본인이 서명한 간단한 위임장으로 해결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본인의 서명을 등록하면 서명대조에 문제없음

□ 프랑스 : 공증과 전자서명제도 활용

○ 공증제도 활용

- 프랑스는 공증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관청, 학교 등, 간단한 서류에도 공증인의 직인을 요구함
- 공증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증인을 경유한 서류는 관청 기타 기관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사회문제가 없음
- 또한 공증관련 분야는 방대하므로 공증성격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한 공증료 기준에서 행함)

○ 공증인 자격요건

- 프랑스 공증인은 법무부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증인의 자격이 부여지며, 공증인은 민원인의 사무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공증인을 신뢰함

○ 전자서명 활용

- 전자서명은 정부기관 또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확인 서명으로 함

제3절 해외사례 종합비교 및 시사점 도출

1. 해외사례 종합비교

- 대부분 외국에서는 주로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를 병행하여 본인의사확인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았음
- 특히,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는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나 자동차거래 등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대만 등 총 3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인감도장 위조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인감증명 사무를 감축시키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음
-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서명제도나 전자신분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 상의 상거래 활성화 및 세금, 연금, 차량등록 등 개인정보 등록·확인하는 데 쓰이고 있음

<표 4-1> 해외사례 종합비교

국가명	본인의사 확인 방법				비고
	인감제도	서명제도	공증제도	기타	
중국	-	-	○	-	-
일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시 인감폐지 시도했으나 반발로 무산 •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기 등 공증 기능
대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도장 위조해 타인 도용 사건 발생 • 인감증명 폐지 및 대체 방안 검토 중
영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제도 활용
아일랜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번호 활용. • 사회보장카드(2012년) 개인발급 • 정보 도용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 검토 중
스웨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적목적 위해 사용
포르투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서명제도 활용
네덜란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서명제도 활용
폴란드	-	-	○	-	-
독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제도 도입으로 공증권한 약화
스위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서명제도 활용
오스트리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공증제도 활용
이탈리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 서명인증, 사진인증, 사본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및 공인제도 활용

국가명	본인의사 확인 방법				비고
	인감제도	서명제도	공증제도	기타	
덴마크	-	-	-	○	• 인터넷상 NEI ID 공인인증제도 활용
핀란드	-	-	-	○	• 본인 서명한 위임장 활용
프랑스	-	○	○	-	-

※ 행정자치부가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실제 국가의 제도운용 관련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는 2개 국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 : 시, 정, 촌 조례 근거
 - 인감등록카드 발급, 카드제시 후 인감등록증명 발급(간접증명방식)
- 대만 : 호적법 근거
 - 법원에 인감신고, 증명신청서 도장대조 후 증명발급(간접증명방식)

○ 서명·공증제도 운영 국가

- 미국 : 각 주정부법 근거
 - 개인서명을 ID카드(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에 압인, 거래서 서명에 대한 공증인이 공증
 - ※ 서명인증이 요구되는 거래시에는 공증인이 직접 현장방문 공증실시

○ 우리나라와 일본 인감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법률형식	• 법률(인감증명법)	• 조례(시정촌)
인감신고 (등록)방식	• 본인이 직접신고 원칙 • 서면(대리)신고시 1인 보증 ※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조회제도 없음	• 본인이 직접등록 원칙 • 대리신고시 본인의사를 문서로 조회후 인감등록증 교부 ※ 본인확인 철저
증명방식	• 간접증명 -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로 출력증명	• 간접증명 - 등록된 인감을 복사발급 증명
발효시기	• 신고 후 즉시 효력발생	• 등록 후 즉시 효력발생
인감대장 관리	• 별도관리	• 별도관리

2. 해외사례 시사점

전자서명제도 활성화

- 유럽에서는 전자서명제도를 활용하여 고급전자서명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의 서명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소송 상의 증거자료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전자서명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설립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해주고 관리·감독하는 형태를 개인정보 보안에 신경 쓰고 있음

공증제도의 보편화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증제도를 근거하여 금융거래, 연금, 부동산거래,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에 이르기 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음. 특히, 프랑스는 관청, 학교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에도 공증인의 직인을 요구함
- 프랑스의 경우, 공증제도 일반화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증인을 경유한 서류는 관청 기타 기관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사회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음. 또한, 공증관련 분야는 방대하므로 공증성격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공증 수수료는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이 최소화시킬 수도 있음
- 공증인은 법무부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증인의 자격을 주어지고 있으며, 공증인은 민원인의 사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증인을 신뢰하고는 있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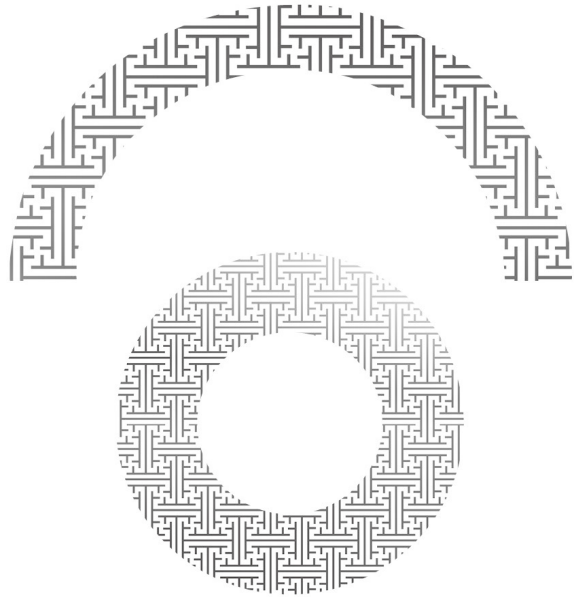
□ 서명제도와 공증제도가 병행

-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특히, 독일에서는 담당공무원 또는 공증인에게 신분증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적거래에서도 서명방식이 법률적 효력이 갖고 있음
- 오스트리아도 본인서명사실 여부를 공증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공증제도를 통하여 공증인 또는 법원이 인정한 증명서에 한해서 부동산 계약, 자동차매매 등 사인간 거래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음

제5장 인감증명 관련 개선방안

제1절 인감사무 감축의 기본방향

제2절 세부적 실천방안



제5장

인감증명 관련 개선방안

제1절 인감사무 감축의 기본방향

1. 중·장기적 인감 폐지

- 기존의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관한 노력들은 비록 논리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것처럼 그 비판 역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인감증명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측 논리
 - 매년 4,000만 통의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나 연평균 인감사고 건수는 190여 건에 지나지 않아 그 사고율이라는 것이 불과 0.000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희박한 사고 중에서도 특히 인감의 위변조에 의한 사건은 연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감의 위조 등에 따른 불안요인을 이유로 인감을 폐지한다는 것에 반대
 -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나 서명 등은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는 인감증명 폐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함
 -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부담되는 인지대가 600원(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인데 비하여 재산권 거래 등 법률행위를 위해 사적 방식의 공증을 받게 될 경우 부담이 대폭 증대할 것임
 - 인감증명은 공신력을 갖춘 정부가 개인에 대한 신용의 보증을 서는 것인 반면, 인감증명을 대신할 것으로 예정되는 사적 공증은 계약당사자가 보증의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성이 현저하게 강화되는 경향 발생

□ 인감폐지 찬성측 논리

- 인감의 위변조에 의한 사고가 전체 인감증명 발급 건수 대비 약 0.00002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감제도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수치라기보다는 인감증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부동산 등 재산권 관련 실제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 공증은 인감증명 외의 방식으로 지금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감증명만의 고유한 보증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노약자 등 전자적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사실상 인감증명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고, 본인확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아니라도 가능한 대안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경제적 부담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없어짐으로 인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감의 대체물을 찾게 되어 늘어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공증이 필요한 고가의 거래의 경우 인감증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비용이 지불되는 공증(예를 들어 법무사의 등기대행 또는 변호사의 공증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일 뿐 이미 광범위한 거래활동에 이용되고 있음
- 국가의 공신력이 아닌 본인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민간의 계약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무시한 주장임
 - 국가 공신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가장치일 뿐 실제 계약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근대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임
- 근래 문제가 된 인감관련 사건의 경우, 그 양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감증명에 과도한 공적 신뢰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로서 개인의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2. 인감증명 제도의 기능명확화

- 인감증명서의 본래 기능은 인감증명서와 그 사람이 날인한 인감도장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의 의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또한, 최근 기술발달로 인하여 인감도장을 위조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각종 계약이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본래기능을 벗어난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음
 - ⇒ 따라서 인감증명법에서 인감증명서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일반계약이나 부동산 매매에 같은 경우 인감증명 보다는 공증제도나 본인사실확인서명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외에도 인감증명서 맨 밑 하단에 별도의 표시를 하고 인감증명서는 거래내용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향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거래까지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인감사무의 감축 및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방향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인감요구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 추진이 필요함. 그동안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을 폐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감증명사무를 감축하는 노력을 진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치사무 위주로 기능분석을 한 결과 여전히 감축이 필요한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요구사무에 대해서 매년 정비하고(일몰제 시행) 신규 법령이 생겨날 경우 인감증명과 관련된 법령인지 사전 협의 등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 및 시행령 외에는 과감히 정비하는 특단의 노력도 필요함
 - 둘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공증제도 등과 같이 인감증명 대체 수단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공증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 신청건수와 발급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법제도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가 많은 것도 한 영역을 차지하지만 반면에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계약(매매) 관련 사무의 공증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본인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의견이었음. 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몇 억 이상의 단위의 계약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인식임.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제안함

제2절 세부적 실천방안

1. 오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인감증명 대체 수단 활성화

- 1960년대부터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인식은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임. 특히, 인감증명제도가 건국초기부터 활용된 제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인감증명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률은 2~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감증명 자체가 갖고 있는 만능인식과 서명제도의 활용범위에 있어서 제한으로 인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증제도 역시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공증인 역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있

어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인감증명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2차적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3차적으로 부동산매매나 비교적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는 공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인감증명 대비 비교우위를 통한 확산 강구

- 현재의 인감증명제도와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비교우위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
-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면 인감증명제도의 이슈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그 첫째는 인영과의 동일성 여부이고 그 다음이 거래의사의 동일성 문제인데, 후자의 경우에 있어 학계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판례에 대해 학계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인영동일성 및 거래의사 동일성 여부의 기능이 현재의 인감제도에 있다고 전제할 경우, 기존의 인감제도와 본인서명제도에서 어느 방안이 판례에 더 부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이에 대해 연구에서 분석하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있는 기명날인은 거래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자 당사자 동일성의 추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기초하여 더 나아가 거래당사자의 거래의사, 문서의 성립과 그 내용의 진정성까지도 추정할 수 있게 됨
 - 인감증명서는 거래당상자의 동일성 등을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의 기명날인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증거보다 거래당사자의 거래의사, 문서의 성립과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더 강한 추정력을 갖음(남효순, 2006: 64)

- 둘째, 사고발생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실질적으로 대리가 불가하고, 직접 서명을 통해 의사를 반영하므로 사고발생가능성이 기존의 인감제도보다 적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행정비용에 있어서도 인감보관 비용 및 이송 등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개인들이 인장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없음
- 넷째, 국제적 보편성에 있어서도 서명제도가 발달된 전세계적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음
- 다섯째, 위·변조 여부에 있어 기존의 제도는 컴퓨터 인장제작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발생여지가 많은데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직접 방문해서 서명하기 때문에 위·변조 발생여지가 적음

<표 5-1>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비교우위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주체 진정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위)	
사고 발생가능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위)	
행정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위)	
개인관리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위)	
국제적 보편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위)	
위·변조 여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위)	

3. 공무원의 인감증명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지속적인 감축 추진

- 현행 법령이나 관행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가 많은 상황임. 특히, 일반계약 사무, 대행계약 사무 등 인감증명서의 요구 없이도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

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협조 하에 매년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감증명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한 해당 관청이나 민간기관에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영역임

인감증명서(안) 예시

주민등록 번호	- 인 감 증 명 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인감		
국적 (외국인)					
(생략)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매수자	성 명 (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0704-0000000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매수자	주 소 (법인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생략)					
사용용도	“ 빈 칸 ”				

※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안전하며, 공증이나 본인 서명사실확인 등의 방안을 추천합니다.

⇒ 서울고법 2014. 4.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문에서 발취 수정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등의 홍보 활성화

-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하면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발급기관, 수임 및 취급기관·단체 모두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마인드가 미흡하고, 서명문화보다 100여년 동안 시행되어온 인감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부동산 또는 일반 거래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자기서명 갖기운동’ 전개, ‘멋진 서명 전시회’ 개최, 본 제도에 대한 순회설명회 개최, 각급기관 단체 회의 시 사회지도층이 솔선 참여하는 시책 발굴 추진 등 실생활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명제도와 공증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공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능의 중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박광동, 2010: 355)

5. 부동산매매 관련 사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또는 공증제 의무화

- 부동산매매나 계약의 금액을 고려해보면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성립한다는 것은 여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현행 인감증명법에서는 발급대상이 대리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인감증명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인감증명제도가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제도내의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계약(매매)관련 사무에 있어서 공증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음. 이는 사적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본인의사에 따른 거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공증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증의 성격에 따라서 공증에 대한 수수료가 차등하는 등 별도의 연구와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기존 인감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의무화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경기신문. (2015). “인감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死法'”. 12월 16일
- 광주일보. (2015). “법인 인감카드 부정 발급 4200만원 빼내기”. 9월 1일
- 국민인권위원회. (2011). “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2016). “부동산거래의 네비게이션 전자계약시스템” 설명자료.
- 김병두. (2004). 印鑑證明에 관한 小考. <법조>, 53(10): 248-285
- 김성태. (2010). 印鑑證明制度의 改編方案에 대한 주된 論議와 問題點에 관한 小考. <법학논총>, 제23집: 199-223.
- 김진일·조상현·이윤희. (2015). 위조인장의 특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4): 93-116.
- 김진일·허준. (2015).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의 위조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52권: 97-118
- 남효순. (2006).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印鑑證明法에서의 印鑑證明書의 本人推定力 : 印鑑證明의 본질과 印鑑證明書의 기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95호: 50-76
- 내일신문. (2016). “인감도장 위조해 법인카드서 현금 빼돌려”. 3월 14일
- 뉴시스. (2015). “배우 이종석 인감·전속계약서 위조, 매니지먼트사 사장…法 ‘실형’ 선고”. 12월 11일
- 목영만. (1991). <행정전산망확충에 따른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광동. (201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48권 : 339-359
- 박광동. (2011). 토지거래규제와 등기 : 토지거래 간접규제로서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논의. <토지법학>, 27(1): 69-91
- 연합뉴스. (2012). “대만, 일제시대 도입 인감제도 폐지 논란”. 8월 29일
- 이대영. (2002). 공직자 논란: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치발전 2002년 8월 호>, pp.82-93
- 「인감증명법」, 법률 제13018호

- 「인감증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883호
- 세계일보. (2015). “불법도박사이트 계좌만 골라 2억원 텀 일당,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받아”. 9월 21일
- 신봉근. (2010). 부동산등기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통권 405호: 7-18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제주신보. (2014).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유명무실”. 10월 8일
- 조선일보. (2015). “내달부터 인감증명 홀로그램 새롭게 바뀌어”. 10월 10일
- 조인우. (2011).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충청투데이. (2015). “인감 증명서 위조방지 업무 ‘미봉책’ 급급”. 11월 9일
- 한국갤럽. (2009). <인감증명제도조사(일반인)>. 행정안전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2009).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질적 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라일보. (2016).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범죄!”. 3월 14일
- 행정자치부. (2015). <인감증명사무편람>.
- 행정자치부. (2016.01.05.).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보도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안내교육”. 1월 29일 강의자료
- 異村美喜夫. (2003). 登記識別情報提供に関する一考察. <登記情報>. 第48卷8号, 民事法情報センター

【부록 : 인감증명 대체사례】

■ 인감증명 대체 사례1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① 자동차등록관리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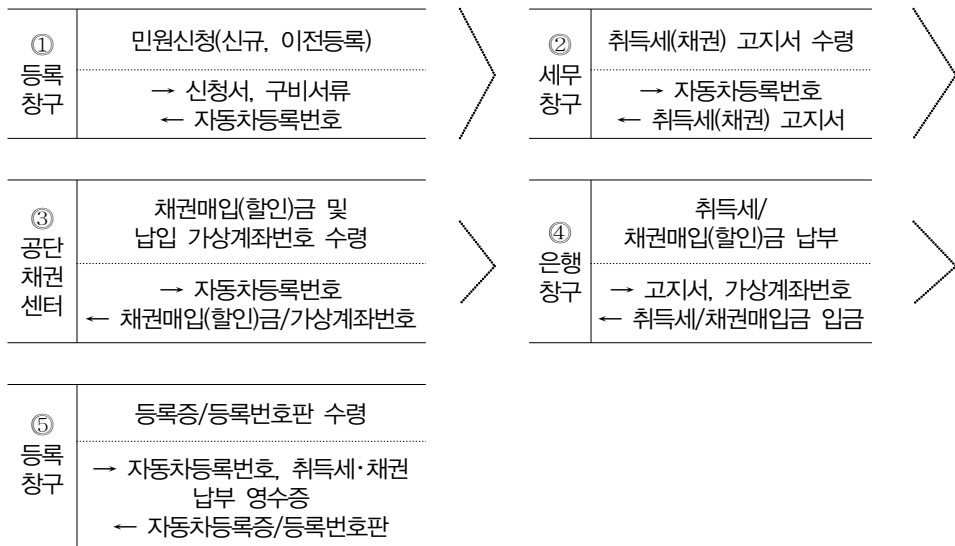
○ 자동차 관리제도

- 자동차가 제작되는 단계부터 폐차, 말소까지를 규정하는 제도로 자동차마다 주요제원 및 변동 상황을 등록원부에 기록관리

○ 자동차 등록업무

-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하는 행위로 ‘10. 12월부터 주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함
- ※ 타 지역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3번 절차 진행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절차>



②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요

- 과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별도의 자동차 매수자 표기 없었음. 따라서, 사용 용도란 ‘자동차 매수용’ 표기하도록 만 되어 있었음. 이로 인하여,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발급후, 당사자거래로 위장, 국세탈세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음
- 현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하면서 인감증명서내에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분리 표기하도록 하여,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하도록 함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한자)	()							인감				
국적(외국인)									(생략)			
부동산 매수자	성명(법인명)	“ 빈 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빈 칸 ”						
	주소(법인소재지)	“ 빈 칸 ”										
(생략)												
사용용도	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홍길동, 130704-0000000											

▼ (2014.01.01. 개정) ▼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한자)	()							인감					
국적(외국인)									(생략)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매수자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30704-0000000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매수자	주소(법인소재지)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생략)													
사용용도	“ 빈 칸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③ 자동차등록제도 상의 인감증명 대체사례

□ 개요

-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인감증명서없이 가능한 방안을 파악하였으나, 2011년부터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서 시행중. 다만 활용률 저조
- 예) 고양시의 경우, 온라인 신청률은 0.6%(하루평균 300건 중 1~2건)에 그침

□ 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이용 절차

- 교통안전공단 접속(www.ecar.go.kr)→양도증명(매도자 공인인증)→이전등록 신청(매수자 공인인증) →기재사항 확인(담당자, 민원24)→수수료(1,000원) 납입여부 확인(담당자)→이전등록 승인→완료

<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이용 절차>



□ 시행결과

- 자동차 이전등록업무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여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의 여지는 없음
- 다만, 자동차등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시스템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봄
 -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도 시스템의 존재를 모르며, 자동차등록사업소 공무원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인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대체처리 가능한 실정이며, 공인인증서 활용이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또는 공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제도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제출은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감증명 대체 사례2 :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

① 부동산 등기 관련 현황

- 부동산거래 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 및 본인 확인을 위해 민원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15년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통수 2,626,437통)하도록 되어 있음

② 부동산 등기상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 종이계약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없음)없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진행 후 등기절차 완료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됨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4년간 154억)의 일환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음

③ 부동산 등기상 전자계약 절차

- 부동산 등기상의 전자계약 절차는 크게 6단계로 진행됨

- ① 공인증개사가 계약사항 기재
- ②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인증(휴대폰인증·공인인증 등)을 통해 각자 서명(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서명 앱 등)
→ 이 부분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부분에 해당됨
- ③ 공인증개사가 들어가서 확인 후 변환불가능 문서로 정리
- ④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 신고
- ⑤ 법원행정처 등기시스템으로 전송
- ⑥ 등기절차 진행(더 이상 추가서류 요구 없이 등기완료)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등기절차>



*자료: 국토교통부(2016.05), “부동산거래의 네비게이션 전자계약시스템” 설명자료

4 부동산 등기상 전자계약으로 인한 기대효과

- 부동산 등기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통하여 몇 가지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계약서 분실위험 없고, 언제든지 열람가능하며, 단순실수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위험 감소시킬 수 있음
 - 둘째, 거래당사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이 설명부담 감소 및 확정일자 수수료(300원) 면제 받을 수 있음
 - 셋째, 공인인증을 통해 인감증명서(본인서명 포함) 없이 계약부터 등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감사무 감축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어르신처럼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거부감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제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고객관점에서 UI 편의성 도모 및 적극적인 홍보 전개하여 인감증명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 등 관련 계약관련 기능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임